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의 관리·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2020. 10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건축자산 보전 · 활용연구회)

제 출 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의 관리·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3. 연구의 내용 ····· 6

제2장 정책 현황 및 사례조사 ····· 9
1. 정책 및 동향 ····· 9
2. 국내 현황 및 사례 ····· 12
3. 국외 현황 및 사례 ····· 79
4. 분석 및 종합 ····· 89

제3장 전북 한옥건축자산 현황조사 및 유형분석 ····· 95
1.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정책 ····· 95
2.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조사 및 분석 ····· 103

제4장 전북 한옥건축자산의 가치판단 기준(안) …… 127
1. 지자체 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 분석 …… 127
2. 전북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안) …… 129

제5장 한옥건축자산 관리·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 139
1. 한옥 건축자산 관리·활용 기본원칙 …… 139
2. 한옥건축자산 관리·활용 가이드라인(안) …… 14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49
1. 결론 …… 149
2. 전라북도 건축자산 정책 제언 …… 152

[부 록] …… 157
1. 전라북도 한옥지원조례 …… 157
2.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리스트 및 건축특성 …… 165
3. 참고문헌 …… 257

표 목 차

[표 2-1] 광역자치단체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현황 ……11
[표 2-2]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물에 대한 예비단계 분석 과정 및 결과 ……12
[표 2-3]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16
[표 2-4] 부산광역시 창조도시 관련 조례 ……17
[표 2-5] 지자체별 한옥관련 조례 제정 ……18
[표 2-7] 소관부서 현황 ……22
[표 2-8] 특수지원 조례 소관부서 현황 ……23
[표 2-9] 서울특별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24
[표 2-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25
[표 2-11]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26
[표 2-12] 대구광역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27
[표 2-13] 광주광역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28
[표 2-14] 인천광역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28
[표 2-15]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29
[표 2-16] 경기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0
[표 2-17] 경기도 수원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0
[표 2-18] 경기도 수원시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표 ……31
[표 2-19] 경기도 광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1
[표 2-20]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2
[표 2-21] 경기도 평택시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표 ……32
[표 2-22] 경기도 평택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2
[표 2-23] 경기도 여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3
[표 2-24] 경기도 남양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4
[표 2-25] 경기도 포천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4
[표 2-26] 강원도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 표 ……35
[표 2-27] 강원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5
[표 2-28] 충청북도 청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6
[표 2-29] 충청북도 충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7
[표 2-30] 충청북도 단양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7
[표 2-31] 충청남도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 ……38
[표 2-32] 충청남도 아산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8

[표 2-33] 충청남도 서산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39
[표 2-34] 충청남도 천안시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 ·····39
[표 2-35] 충청남도 천안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40
[표 2-36] 충청남도 홍성군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 ·····40
[표 2-37] 충청남도 천안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40
[표 2-38] 전라북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41
[표 2-39]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41
[표 2-40]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 ·····42
[표 2-41]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42
[표 2-42] 전라북도 완주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43
[표 2-43] 전라북도 임실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43
[표 2-44] 전라남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44
[표 2-45] 전라남도 나주시 한옥 보조금 지원기준 ·····45
[표 2-46] 전라남도 나주시 전통한옥지구(신축) 보조금 지원기준 ·····46
[표 2-47] 전라남도 나주시 전통한옥지구(대수선) 보조금 지원기준 ·····47
[표 2-48] 전라남도 나주시 한옥 보조금 지원기준 ·····47
[표 2-49] 전라남도 나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48
[표 2-50] 전라남도 목포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49
[표 2-51] 전라남도 목포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49
[표 2-52] 전라남도 순천시 한옥보조금 지원기준 ·····50
[표 2-53] 전라남도 여수시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기준 ·····51
[표 2-54] 전라남도 강진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51
[표 2-55] 전라남도 곡성군 한옥보조금 지원기준 ·····52
[표 2-56] 전라남도 곡성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53
[표 2-57] 전라남도 담양군 한옥보조금 지원기준 ·····53
[표 2-58] 전라남도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기준 ·····55
[표 2-59] 전라남도 영암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55
[표 2-60] 전라남도 신안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56
[표 2-61] 전라남도 완도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56
[표 2-62] 전라남도 장성군 한옥 면적별 군비 보조금 지원기준 ·····57
[표 2-63] 전라남도 진도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58
[표 2-64] 전라남도 해남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58
[표 2-65] 전라남도 장흥군 한옥 면적별 군비 보조금 지원기준 ·····59
[표 2-66] 전라남도 장흥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59
[표 2-67] 경상북도 문경시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61
[표 2-68] 경상북도 안동시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62

[표 2-69] 경상북도 고령군 한옥 보조금 지원기준 ·····63
[표 2-70] 경상북도 성주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64
[표 2-71] 경상북도 예천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64
[표 2-72] 경상북도 의성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65
[표 2-73] 경상북도 청송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65
[표 2-74] 경상남도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67
[표 2-75] 경상남도 거제시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67
[표 2-76] 경상남도 거창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68
[표 2-77] 경상남도 창녕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69
[표 2-78] 경상남도 하동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69
[표 2-79] 경상남도 하동군 면적별 보조금 지원기준 ·····69
[표 2-80] 전북, 전국별 한옥 신축 및 수선 지원 사업비 ·····70
[표 2-81] 전북, 전국별 한옥 지원 범위 ·····71
[표 2-82] 시대별 문화재 관리 구분 ·····72
[표 2-83] 국가 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제시 ·····73
[표 2-84] 세종특별자치시 제시 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74
[표 2-85] 제주특별자치도 제시 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75
[표 2-86] 경기도 제시 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76
[표 2-87] 대전광역시 제시 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77
[표 2-88] 충청남도 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 ·····77
[표 2-89] 해외 건축자산 기록 관리 전문기관 현황 ·····79
[표 2-90] 캐나다 건축센터 시설 현황 ·····80
[표 2-91]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건축자산 선정 가이드라인 ·····81
[표 2-92] 지자체 차원의 역사지원관리 ·····85
[표 2-93] 등록유형문화재와 역사적 건조물의 비교 ·····85
[표 2-94] 역사적 건축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프로세스 ·····86
[표 3-1] 한옥 제도적 정의 ·····95
[표 3-2] 전라북도 지자체별 한옥 정의 ·····96
[표 3-3] 타지방 지자체별 한옥 정의 ·····97
[표 3-4] 한옥정의 지정 지자체 수 ·····99
[표 3-5] 주요 사용 용어 ·····100
[표 3-6] 전라북도 한옥지원 조례 ·····101
[표 3-7] 전북, 전국별 한옥지원 소관부서 ·····101
[표 3-8] 전북, 전국별 특수 지원 조례 소관부서 ·····102
[표 3-9] 전라북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시군별 분포 ·····103
[표 3-10] 전라북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시대별 분포 현황 ·····104

[표 3-11] 기존 수행 문헌조사 유형별 건축자산 현황 ·····106
[표 3-12] 전라북도 건축자산 현황 ·····106
[표 3-13] 전라북도 한옥 조사대상 ·····108
[표 3-14]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후보군 지역별 분포 ·····115
[표 3-15] 전라북도 평면형태 ·····116
[표 3-16] 전라북도 가구구조 ·····117
[표 3-17] 전라북도 기둥형태 ·····118
[표 3-18] 전라북도 한옥 정면규모 ·····119
[표 3-19] 전라북도 한옥 측면규모 ·····120
[표 3-20] 전라북도 한옥 처마유형 ·····120
[표 3-21] 전라북도 한옥 지붕형태 ·····122
[표 4-1] 국가 및 지자체 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사례 종합 ·····128
[표 4-2]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가치 판단기준(안) ·····130
[표 4-3]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역사적 가치 등급별 기준(안) ·····131
[표 4-4]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건립연대 등급별 기준(안) ·····132
[표 4-5]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경관적 가치 등급별 기준(안) ·····132
[표 4-6]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예술적 가치 등급별 기준(안) ·····132
[표 4-7]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기술적 가치 등급별 기준(안) ·····133
[표 4-8]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보존적 가치 등급별 기준(안) ·····133
[표 4-9]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지역 사회문화적 가치 등급별 기준(안) ·····133
[표 4-10]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유지관리 및 활용 가치 등급별 기준(안) ·····134
[표 4-11]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안) 종합 ·····134
[표 4-12]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등급별 정량적 제시(안) ·····135
[표 4-13]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적용 예시(1번) 기준(안) ·····135
[표 4-14]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적용 예시(2번) 기준(안) ·····136

그 림 목 차

[그림 1-1] 방치에 따른 훼손 유형 ·····3
[그림 1-2] 보수 따른 원형 훼손 유형(지붕 및 벽체 등) ·····4
[그림 1-3] 유지관리하고 있는 유형 ·····4
[그림 1-4] 미래 건축자산(한옥) ·····4
[그림 1-5] 연구수행과정 ·····5
[그림 2-1] 제 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9
[그림 2-2] 한옥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현황도 ·····14
[그림 2-3]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특례 ·····15
[그림 2-4]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 ·····16
[그림 2-5] 부산 산복도로 ·····17
[그림 2-6] 근대역사문화거리 경관사업 ·····17
[그림 2-7] 한옥조례 제정 현황 ·····22
[그림 2-8] 서울시 한옥 수선(신축)길잡이 ·····23
[그림 2-9] 건축자산의 시간적 범위와 가치 ·····72
[그림 2-10] 리스트 작성 프로세스 ·····82
[그림 2-11] 템플바의 가치 있는 건축물과 가로 보존 등 ·····83
[그림 2-12] 구마모토아트폴리스 추진상 ·····84
[그림 2-13] 역사적경관건조물등록제도 신청서 및 프로세스 ·····86
[그림 2-14] 역사적 건조물의 활용을 위한 판단 ·····87
[그림 2-15] 거리환경 정비사업에 의한 정비시설 ·····87
[그림 2-16] 가고시마 이즈미시 건조물 관리 ·····88
[그림 2-17] 건축자산 기반 도시재생 및 지역경쟁력 강화 사례 ·····91
[그림 3-1] 전라북도 시군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현황 ·····104
[그림 3-2] 전라북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시대별 분포 현황 ·····105
[그림 3-3] 전라북도 한옥 평면도 ·····116
[그림 3-4] 전라북도 한옥 가구도 ·····117
[그림 3-5] 전라북도 한옥 기둥형태 ·····118
[그림 3-6] 전라북도 한옥 정면 ·····119
[그림 3-7] 전라북도 한옥 측면 ·····120
[그림 3-8] 전라북도 한옥 처마 ·····120
[그림 3-9] 전라북도 한옥 처마 가구도 ·····121

[그림 3-10] 전라북도 한옥 처마 가구도 ·····121
[그림 3-11] 전라북도 한옥 지붕형태 ·····122
[그림 4-1] 장회동 210-1 가옥 위성사진 ·····135
[그림 4-2] 장회동 210-1 가옥 사랑채 ·····135
[그림 4-3] 백화리 한옥 전경 ·····136
[그림 4-4] 백화리 한옥 내부 ·····136
[그림 5-1] 홑처마 ·····144
[그림 5-2] 겹처마 ·····144
[그림 5-3] 신축한옥주택사례(안) ·····145
[그림 5-4] 배치도, 지붕도, 입면도 ·····146
[그림 6-1]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사례 ·····153
[그림 6-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GIS) 사례 ·····153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내용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과 업 명 :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의 관리·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1.1. 배경 및 목적

□ 배경

○ 국가 및 지역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건축적 가치를 보유한 자원 다수 분포

○ 지역의 정체성 및 시대적 역사성을 보유한 한옥이 다수 존재

○ 장기간 방치에 따른 훼손 및 소실이 심각한 실정 등의 현실적 문제 해결 시급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한 국가지원 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 연구,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수립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기초연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필요

○ 현재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만들어가는 과정 필요



[그림 1-1] 방치에 따른 훼손 유형

※ 사진: 남내리 가옥, 화호리 가옥




[그림 1-2] 보수 따른 원형 훼손 유형(지붕 및 벽체 등)

※ 사진 : 마룡리 가옥




[그림 1-3] 유지관리하고 있는 유형

※ 사진: 오곡리 가옥, 하고리 가옥




[그림 1-4] 미래 건축자산(한옥)

※ 사진: 전라감영 선화당, 전북대 한옥정문

□ 목적

○ 전라북도 건축자산 중 **한옥을 조사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한옥 건축자산의 가치 판단 기준 및 관리·활용 가이드라인(안) 마련

○ 지역의 전통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옥의 소멸 최소화

○ 지역의 건축자산을 바르게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전라북도 지역 내 14개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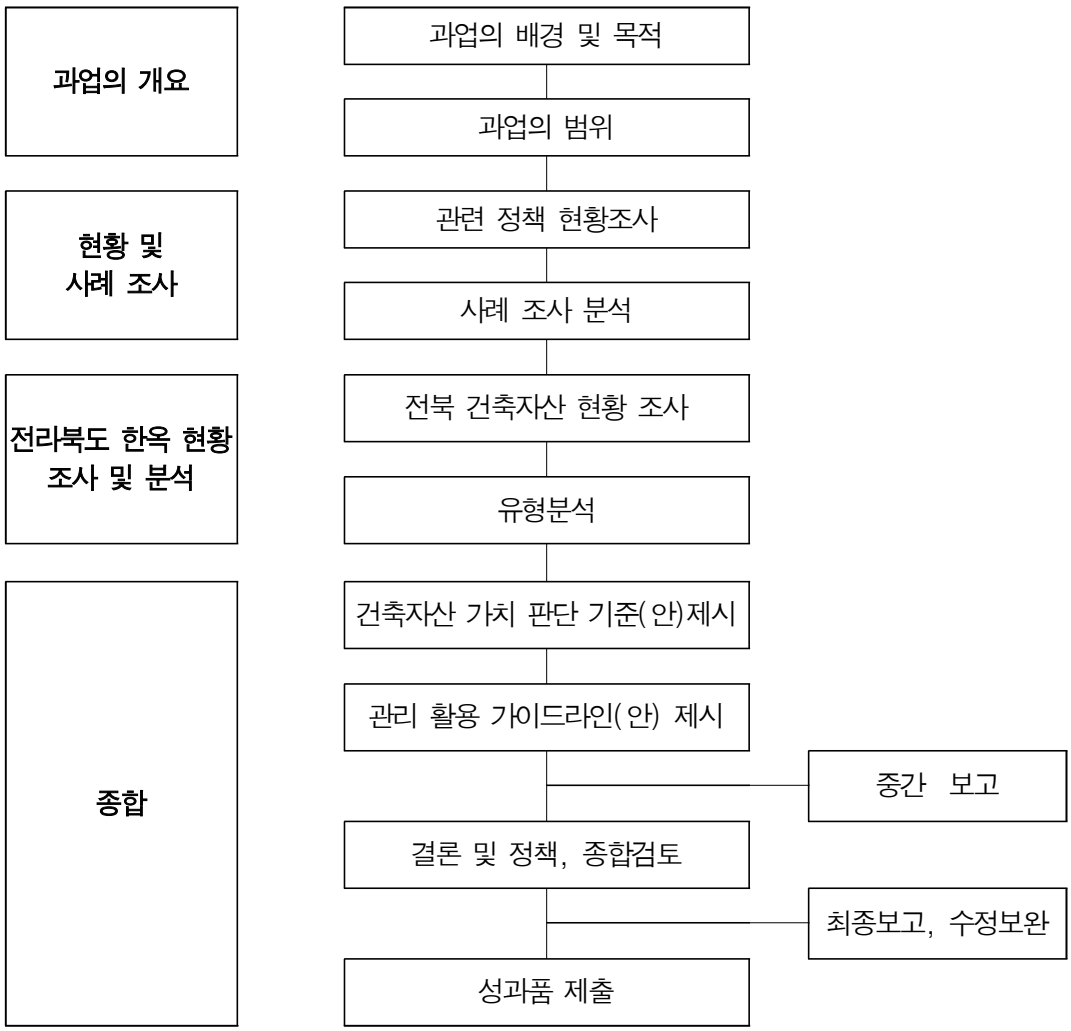
□ 연구방법

○ 관련 문헌 및 제도 검토

○ 건축자산 사례 조사

○ 현장 및 전문가 자문

□ 연구수행과정



[그림 1-5] 연구수행과정



1.3. 연구의 내용

□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

□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사례조사

○ 정부 정책 및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

○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

□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현황 조사 및 유형 분석

○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관리·활용 관련 정책 현황

○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의 특성 분석 및 유형 분류 등

□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의 가치 판단 기준(안) 제시

○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의 가치 판단 기준(안) 제시

○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의 가치 판단 기준(안)의 적용방안 등

□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의 관리 ·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 한옥 건축자산 가치의 기록, 구조, 형태, 용도, 구성요소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

□ 결론 및 정책 제언

Ⅱ 정책 현황 및 사례

1 정책 및 동향
2 국내 현황 및 사례
3 국외 현황 및 사례
4 분석 및 종합

Ⅱ. 정책 현황 및 사례

1. 정책 및 동향

1.1. 중앙정부 정책 및 동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015.06)

○ 2014년 6월 제정, 2015년 6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 법률 일부 개정

- 건축자산 지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과 관련사항 등을 개정(2017.8)
- 2017년 8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 개정(공동 심의, 구역 금지·제한 영업 또는 시설 설치, 건폐율 완화 범위 신설)(2018.2)
-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 개선 보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8.2)

□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수립

비전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	
정책 목표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
실천 과제	1. 건축자산 총조사 지원 – 건축자산 기초조사 기반 구축 및 기록화 프로그램 등 2. 건축자산 기초연구 – 건축자산 용어, 유형·가치 및 스토리텔링 요소 발굴 등 3. 국민공감 확산 – 건축자산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및 주민참여형 교육 실시 등	4. 한옥 조성 확대 – 특화형 한옥마을 조성,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활성화 등 5.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 리모델링 기술지침 개발, 지역별 클러스터 등 산업기반 조성 6. 건축자산 활용 선도 – 공공 우수건축자산 활용 지원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범사업 추진 등

[그림 2-1] 제 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 출처 : 국토교통부(2015),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고시(2016)

○ 주관 국토교통부

○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

○ 기초조사 개요, 대상, 방법 및 과정, 서식 및 총괄 관리표 작성법

□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관리 체계 개선 연구」 (2018)

○ 주관 국토교통부, 연구 도시공간연구소

○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관리 문제점 도출

○ 조사 및 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 특화재생 사업'으로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공모

- 2018~2023년 100여곳 선정 예정

○ 신청조건

- 건축자산 기초조사 완료(예정)지역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예정)지역

□ 고도보존 사업

○ 주관 문화재청

○ 금마고도지구, 경주 등 고도지구를 지정

○ 지정지구 내 한옥 조성시 지원

1.2. 지방자치단체

□ 건축자산의 진흥 정책 도입 현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도입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 2015년 인천, 경북 조례 제정 이후 17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 시행

○ 국가 정책에 따라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 제 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 2017년 8월 개정된 법률에서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도록 함
- 지자체 9곳 수립완료 및 용역 진행
- 2018 서울, 경기도, 세종특별시, 2019 인천, 대전, 충남, 전남, 제주, 2020 강원도

○ 지자체 '**건축자산 기초조사연구**'

- 지자체 8곳 완료 및 조사 중
- 서울,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 인천, 대전, 충남, 전남 1차완료 및 조사 중

[표 2-1] 광역자치단체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현황

구분	기초조사	진흥 계획 수립	관련 조례	우수건축자산/건축자산 진흥구역
서울특별시	추진 중	완료	2016.3.24.	우수건축자산 지정(체부동 성결교회, 대선제분, 킴벨선교사 주택) 등록 건축자산 진흥구역 예정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	-	2016.7.13	-
대구광역시	-	-	2019.10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향촌동일대)
인천광역시	추진 중	완료	2015.11.16.	-
대전광역시	완료	완료	2016.4.1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이사동일대)
광주광역시	-	-	2017.11.1	건축자산 가치 발굴 공모사업 선정
울산광역시	-	-	-	-
경기도	3개 시·군 조사	완료	2016.1.4.	우수건축자산 지정(매향리쿠니사격장)
강원도	추진 중	완료	2017.11.3.	-
충청남도	시·군 조사완료	완료	2017.4.20.	-
충청북도	추진 중	완료	2017.11.10.	-
전라북도	-	-	2016.12.30.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군산 영화동/월명동/명신동 일대)
전라남도	추진 중	완료	2016.12.22.	-
경상북도	-	수립 중	2015.12.31.	경상북도 건축자산 조성 및 활용방안
경상남도	-	-	2019.03.28	-
제주특별도	1단계 완료	수립 중	2017.3.8.	-
세종특별시	완료	수립 완료	2016.10.31.	-

※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자체 건축자산 관련 사업 시행 현황(2019년 9월 기준)

□ 전라북도 현황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2016.12.30.제정)

○ 전북연구원 : 건축자산기초연구(2016), 건축기본계획(2019) 수립



○ 건축자산 기초조사 연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추진 예정(2021년)

○ 우수건축자산/건축자산 진흥구역

- 군산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영화동/월명동/명산동 일대 지정(2017.7)

2. 국내 현황 및 사례

2.1 국내 현황 및 사례

가. 건축자산 조사 및 활용

□ 건축자산 기초조사 연구 사례

○ 충청남도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분석과정 12회**

[표 2-2]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물에 대한 예비단계 분석 과정 및 결과

1차 분석(①-1)	2차 분석(①-2)	3차 분석(①-3)
-충남도제공자료수령 -연기군 제외	-연기군 제외	-충남도 제공 자료 병합 -주소중복 검토
[총 수령] 건축물 4,570,791건 [집합건축물 재분류] 건축물 1,264,066건	1.연기군 : 141,831건 제외	1.건축물 종합 : 553,030건 -일반건축물 : 537,370건 -집합건축물 : 15,660건
4차 분석(①-4)	**5차 분석(①-5)**	**6차 분석(①-6)**
-시기구분 ※민간건축물: 30년 기준 : 사용승인1988년(허가1986년)이전 ※공공건축물: 20년 기준 : 사용승인1998년(허가1996년)이전	-주소 불명 건축자산 제척	-연도미상 미상 재검토
1.건축물 종합 : 237,830건 -공공건축물 : 3,619건 -민간건축물 : 234,211건	1.건축물 종합 ; 236,809건 -공공건축물 : 3,606건 -민간건축물 : 233,203건	1.건축물 종합 : 236,809건 -공공건축물 : 3,606건 -민간건축물 : 233,203건
7차 분석(①-7)	**8차 분석(①-8)**	**9차 분석(①-9)**
-2차 시기구분	-2차 주소 불명 건축자산 제척 ※도로명새주소 일치 여부 ※지오코딩(좌표전환) : 인근좌표 추출 ※다음지도, 토지이용규제정보 검색	-(지정)문화재 중복 제척 ※998건 중 건조물 유형 441건 추출 ※440건 제척 ('59년 이상 1건)
1.건축물 종합 : 232,459건 -공공건축물 : 3,540건 -민간건축물 : 228,919건	1.건축물 종합 : 194,865건 -공공건축물 : 3,047건 -민간건축물 : 191,818건	1.건축물 종합 : 194,568건 -공공건축물 : 3,032건 -민간건축물 : 191,536건
10차 분석(①-10)	**11차 분석(②-1)**	**12차 분석(②-2)**
-연도별 미상 재검토 2차 ※GIS건물통합정보 (국가공간정보 포털/20181104 기준) ※공공 28건, 민간 1,561건	-문헌자료 검토 결과 병합(1차) ※수상작 등 ※사군지, 관련보고서 자료	-공사 및 공간자료 병합(1차)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충청남도 자료 등
1.건축물 종합 : 193,484건 -공공건축물 : 3,024건 -민간건축물 : 190,460건	1.건축물 종합 : 194,506건 -공공건축물 : 3,024건 -민간건축물 : 190,460건 -미상 : 1,022건	1.건축물 종합 : 196,092건 -공공건축물 : 4,610건 -민간건축물 : 190,460건 -미상 : 1,022건

※ 출처 : 충청남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연구, 충남연구원, 2019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활용

○ 지원목표(2016년~2020년)

- 서울 한옥(11,776동) 및 근현대건축자산(210동), 미래유산(278동) 중 **2020년까지 300동 지원 목표**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등)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및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

○ 계획상 근거

- 2015. 6.25.;서울 한옥자산 선언

○ 지원대상 및 내용

- 한옥밀집지역(종로구 5개, 성북구 2개) 내 등록한옥 및 등록예정 한옥 소유자로서 한옥수선 등의 공사비용 보조 및 융자 신청자

○ 사업기간 : 2001년~계속사업

- ’16년도 소요예산(안) : 3,120,000천원
- 보조금 2,320,000천원 / 융자금 800,000천원

나. 건축자산 및 진흥정책

(1) 서울시

□ 역사문화자원 관리를 위한 지구 지정

○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세분화하여 용도지구를 별도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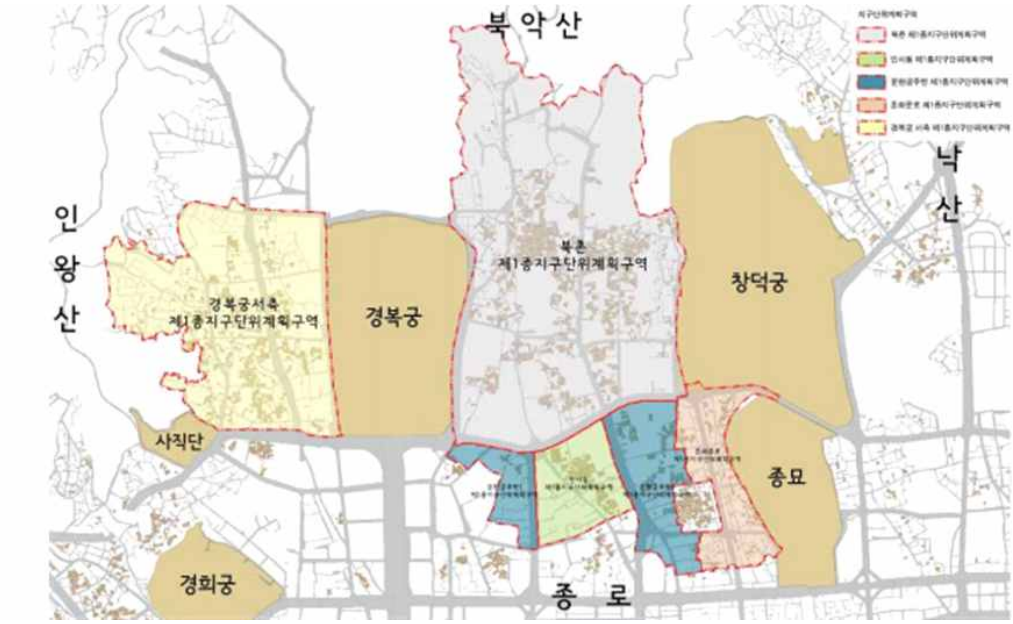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

○ 개화의 상징인 외교공관과 종교시설, 교육시설, 절충 양식의 근대 단독주택과 근대 한옥

○ 북촌 한옥 등 서울 한옥 보수 정비지원, 은평한옥마을 신축한옥 지원



서울 한옥 건축자산 유형



[그림 2-2] 한옥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현황도

※ 출처 : 서울시 알기쉬운 한옥수선 길잡이

□ 은평 한옥마을(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특별건축구역 지정)

○ 서울시는 2011년 은평뉴타운 3-2지구 내 한옥마을 조성계획 발표

○ 단독주택단지 약 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

○ 한옥건축 의무지역으로 지정, 한옥 건축 유도를 위한 지침을 마련

○ 2012년 한옥지정구역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 단독주택지 내 한옥지정구역 별도의 계획수립을 위한 예외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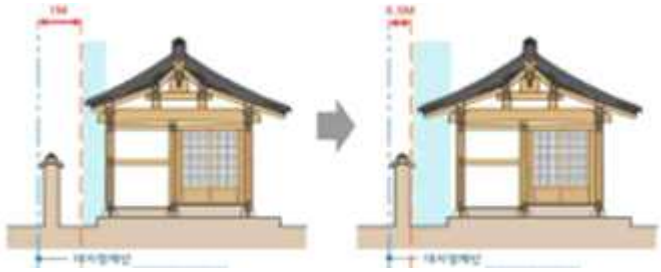
○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건축지침 조항 마련

○ 한옥 신축을 위한 계획 및 특례규정

○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도로, 완충녹지, 근린공원 일부 조정

▪ 건축법 제 58조 대지안의 공지특례적용

구분	현행기준		완화범위	비고
	건축법시행령	서울시조례		
건축선	1m이상 4m이하	1m이상	적용배제	-
인접대지 경계선	0.5m이상 4m이하	1m이상	처마선 0.5m이상	민법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이격거리 확보의무를 감안



현행규정 특례적용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례 적용

구분	서울시 조례(2012)		완화범위
	기준	이격거리	
단독 주택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높이 5m이하 부분 1m이상, 8m이하 부분 2m이상, 8m초과 부분 1/2이상(높이 9m이하 부분 1.5m이상, 높이 9m초과 부분1/2이상으로 기준 변경(건축법 시행령 개정(2012.12.12.))	적용배제
다세대 주택	채광방향 창문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1m 이상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특례 적용

현행기준(법 및 조례)			특례 적용범위
적용대상	조성면적	식재면적	
대지면적 200㎡	대지면적의 5%이상 (연면적 1,000㎡ 미만인 경우)	조경면적의 60% 이상	적용배제

[그림 2-3]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특례



(2)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 근대건축자산의 재정비 사업 추진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예술창작벨트 조성)

○ 군산시 월명동, 장미동 일원(466,000㎡)의 방치된 근대문화유산을 도시 경관자원으로 조성

○ 근대문화유산 172점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930년 근대 군산시간여행을 주제로 근대문화도시 조성

○ 연간 11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거점 자원으로 활용

[표 2-3]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사업명	내용	비고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	- 세계 최초 함포해전인 진포대첩의 역사적 현장에 조성한 테마공원 - 육·해·공군의 퇴역 장비 전시 등	2010.8월 개원
근대역사박물관	- 해양물류관, 기획전시관, 근대생활관	2011.9 개관
근대건축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 일제강점기 대표적 금융기관으로 보수·복원 후 근대건축관으로 조성	1922년 건립 국가등록문화재 제374호
근대미술관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 쌀 반출 및 토지 강매를 위해 1907년 개설 - 보수·복원하여 미술관을 활용	1907년 건립 국가등록문화재 제372호
장미갤러리 (구. 작산가옥)	- 해방 후 위락시설로 사용 - 1층 문화체험장, 2층 갤러리 조성	1920년대 건립
장미공연장 (구. 대한통운 창고)	-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쌀 보관창고 - 다목적 소극장으로 조성(77석)	1930년대 건립
미즈카페 (구. 미즈상사)	- 무역회사와 상업시설로 활용 - 1층 카페테리아, 2층 북카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개입찰하여 사용수익허가 운영 중)	1930년대 건립
근대역사경관 조성	- 일본식 숙박체험공간 6개동 23실 100명 -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10동 임대 - 역사체험공간 : 역사교육관 1동, 군산항쟁관 1동 - 종합안내센터 1동	2009-2015



근대역사 경관 조성 전



근대역사 경관 조성 후

[그림 2-4]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

※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자료

(3) 부산시 창조적 도시공간 재생사업

○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중 창조도시에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창조도시기획, 도시재생사업 추진

[표 2-4] 부산광역시 창조도시 관련 조례

대분류	중분류	조례명
제11편 창조도시	제1장 창조도시기획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투자개발사업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장 도시재생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장 시민공원추진	-

- 부산 고유의 자산을 발굴하여 창조거점으로 육성
-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8.15 해방과 6.25의 역사적 내용)
-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주거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등의 지역자원을 주민 참여형 종합재생 프로젝트



[그림 2-5] 부산 산복도로

※ 출처 : http://www.busan.go.kr

(4) 포항시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사업

○ 구룡포 근대역사문화거리를 통한 도심활성화

○ 역사문화경관자원의 일환으로 가로정비와 건축물 정비·개선

○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 거주지역 내 일본식 가옥(적산가옥) 등 30동 보수

○ 공공과 사적 공간이 일체된 공간으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공간 유지

○ 역사문화도시 지정(문화재청)



[그림 2-6] 근대역사문화거리 경관사업



2.2 지방자치단체의 한옥조례 조사

□ 지자체별 한옥관련 조례 제정 시기 및 소관부서 (2020년 08월 기준)

[표 2-5] 지자체별 한옥관련 조례 제정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소관부서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6.03.24. (2019.03.28.)	한옥건축자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2.31.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4.10. (2020.05.14.)	문화관광과 박물관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2.31. (2018.05.25.)	관광기획팀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6.07.13.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7.25. (2017.07.07.)	문화관광과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9.12.24.	건축주택과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7.11.01.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2018.04.10. (2020.02.10.)	문화관광팀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2.30. (2016.06.29.)	문화관광과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5.11.16.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6.04.12.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경관과
울산 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04. (2020.08.03.)	문화관광과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6.10.31.	건축과
경기도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2016.01.04. (2018.11.13.)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2019.03.29.	화성마케팅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2009.06.19. (2017.01.03.)	한옥지원팀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	2006.06.05. (2020.01.03.)	공원정책과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9.07.12.	건축과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	2019.02.15.	건축과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8.12.18.	건축허가과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2019.06.24.	허가건축과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소관부서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	2016.06.09.	건축과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7.01.	건축과
강원도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2013.08.02. (2019.11.08.)	건설교통국 건축과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2015.10.01. (2019.11.14.)	건축과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2016.09.28. (2018.12.12.)	도시재생과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10.05.	기획감사실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1.06.	허가과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05.30. (2018.12.17.)	주민복지과
충청북도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7.11.10.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14.07.01.	도시재생사업과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2012.12.28. (2019.11.01.)	건축과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2015.05.01. (2019.03.25.)	민원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7.04.20. (2019.02.20.)	건축도시과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2020.04.06.	휴양사업소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2012.06.19. (2020.07.10.)	문화예술과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9.12.18.	건축허가과
	아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6.05.	건축과
	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10. (2020.06.01.)	건축디자인과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4.15.	건축과
전라북도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6.12.30. (2020.05.29.)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30.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2016.11.30. (2019.11.26.)	문화관광산업과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5.15.	건축과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2015.12.30.	한옥마을지원과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2014.04.28. (2019.03.25.)	문화유산관광과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소관부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2010.10.07. (2019.12.19.)	건축과 건축행정
	임실군 한옥 지원 조례	2019.05.31.	주택관리팀
전라남도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6.12.22.	건축개발과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2007.01.12. (2020.03.16.)	건축개발과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2009.05.27. (2017.12.27.)	건축과
	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11.11.	건축허가과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2009.04.20. (2020.03.06.)	건축허가과
	나주영상테마파크 내 한옥숙박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018.10.01.	역사관광과
	목포시 한옥민박사업활성화지원조례	2007.12.31. (2019.12.23.)	관광과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	2011.10.17. (2015.08.03.)	건축행정과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2008.09.29. (2019.11.12.)	건축과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07.05.31. (2018.09.18.)	허가민원과
	강진군 한옥 지원 조례	2016.10.07.	민원봉사과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09.01.09. (2019.12.23.)	종합민원과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2009.04.16. (2019.04.03.)	민원실
	구례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07.11.26. (2010.12.31.)	투자경제과
	담양군 한옥 지원 조례	2009.04.08. (2020.05.11.)	도시디자인과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	2008.10.27. (2020.07.20.)	지역개발과 지역공동체
	보성군 한옥지원 조례	2009.03.23. (2019.04.10.)	산업안전국 도시개발과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	2009.08.06. (2017.12.28.)	민원봉사과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2009.04.20. (2018.12.28.)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08.01.31. (2019.12.12.)	주택팀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2008.09.25. (2016.02.23.)	민원봉사과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2009.06.23. (2018.10.30.)	도시재생과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2008.01.22. (2017.12.29.)	건설도시과
	진도군 한옥지원 조례	2009.04.14. (2019.09.25.)	관광개발국 지역개발과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	2009.01.20. (2020.07.15.)	미래전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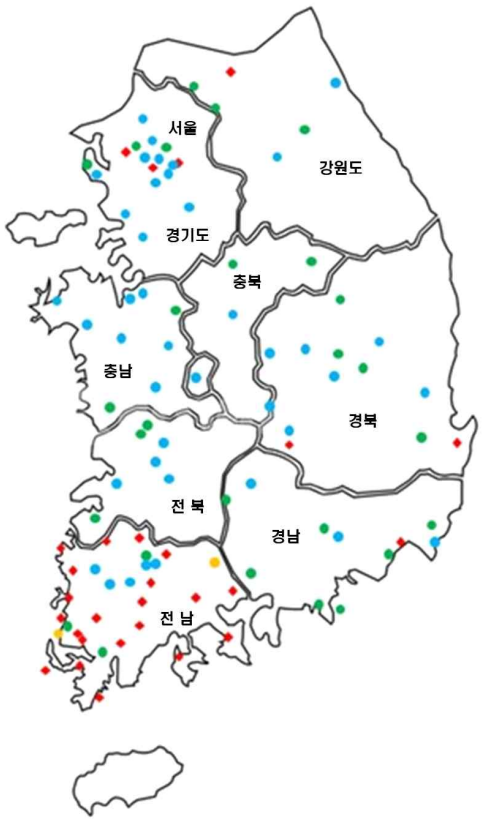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소관부서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2008.06.11. (2019.10.29.)	건설과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08.03.09. (2019.12.11.)	도시과
경상북도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5.12.31.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경주시 건축 조례(제7장)	2007.01.16. (2017.09.08.)	건축과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2010.05.12. (2018.02.23.)	관광컨벤션과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	2017.11.23.	건축디자인과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	2018.01.08. (2019.10.01.)	건축디자인과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2.06.15. (2018.03.02.)	건축과
	영주시 건축 조례(제68조의2, 제68조의3)	2007.07.11. (2020.05.26.)	건축과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자료관·향토음식점 관리 및 운영 조례	2010.03.02. (2020.06.22.)	문화예술과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2017.05.02.	건축과
	고령군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의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	2009.12.24. (2019.03.29.)	주거개선담당
	성주군 한옥 지원 조례	2017.12.28.	도시건축과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	2019.05.13.	건축과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2016.12.30. (2018.10.10.)	민원과
	청송군 한옥 지원 조례	2015.12.31.	문화관광과
	칠곡군 한옥지원 조례	2018.08.14.	건축디자인과
경상남도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9.03.28.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거제시 한옥지원 조례	2011.05.30. (2015.11.24.)	건축과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2006.05.08. (2020.06.26.)	가야사복원과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	2015.07.22.	도시건축과
	창녕군 한옥 지원 조례	2011.07.13. (2017.04.03.)	도시건축과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2012.01.12. (2019.08.30.)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

※ 출처 : 지자체 홈페이지 및 담당자 인터뷰

□ 한옥조례 제정 현황

○ 조례제정 총 94건으로 전남 28건(29.8%), 경북 16건(17%) 순이며, 전북은 8건(8.5%)

○ 2016년 이후 제정 및 개정 다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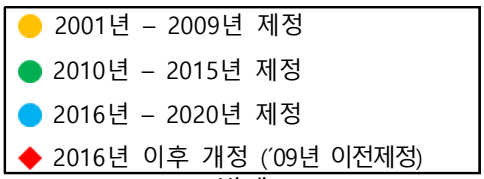
<지역별 분포도>

제정년도	제정 수	비고
2001~'09	2	개정 미포함
2010~'15	28	
2016~'20	42	
2016 ~	28	'09이전 제정

<연도별 제정건수>

지역별	제정건수		비고
전북	8	8.5	
강원	6	6.3	
경기	11	11.7	인천
경남	8	8.5	부산, 대구
경북	16	17.0	울산
서울	4	4.3	
전남	28	29.8	광주
충남	9	9.6	대전, 세종
충북	4	4.3	
계	94	100	

<지역별 제정건수>



<범례>

[그림 2-7] 한옥조례 제정 현황

○ 소관 부서현황

- 소관 부서는 건축과 30곳(30.9%)으로 가장 많고 문화관광 16곳(16.5%)

[표 2-7] 소관부서 현황

(단위 : 개소, %)

전국	건축	문화관광	도시	민원	건축허가	주택	한옥	그 외	계
	30	16	15	8	7	7	3	11	97
비율	30.9	16.5	15.5	8.5	7.1	7.1	3.1	11.3	100

※ 그 외 소관부서 목록 : 복지, 경제, 기획감사 등

○ 특수 지원 조례 소관부서 현황

- 전북의 전주시와 같이 기존 한옥자원을 보유한 지역은 별도소관부서 운영

[표 2-8] 특수지원 조례 소관부서 현황

(단위 : 개소)

전국	한옥체험마을	한옥마을	한옥학교	한옥문화·박물관	그 외
	7	6	2	2	5

※ 그 외 특수 목록 : 남한산성, 소방안전관리, 한옥견본주택, 한옥민박, 전통한옥수련관

2.3 한옥 신축 및 보수 지원

가. 서울특별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1) 서울특별시(제21조)

□ **한옥 수선 등 가이드라인**

○ 한옥 신축 및 수선 길잡이 발간, 서울시, 2014

○ 한옥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원



[그림 2-8] 서울시 한옥 수선(신축) 길잡이

□ **지원범위**

○ 한옥 전면수선 등의 경우

-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 외관은 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

- 한옥의 내부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 내부는 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과 목욕실 등을 말한다.

○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내부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 한옥의 부분수선인 경우

-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 한옥건축양식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표 2-9] 서울특별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전면수선 등의 경우	외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용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 다만, 추가금액은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내부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한옥 신축하는 경우	외관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용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
	내부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한옥 부분수선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공사비용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건축양식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공사비용 범위 안에서 지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제8조)

□ **지원범위**

○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외관 또는 내부 수선의 경우

-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내부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상환은 3년 거치 10년으로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표 2-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용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또는 내부 수선하는 경우	외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용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
	내부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공사비용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부분수선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에 한함

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제18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 한옥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한옥수선 제외)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상환은 3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표 2-11] 부산광역시기장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수선 등의 경우 (리모델링 포함)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는 제외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지원

다. 대구광역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제18조)

□ 지원범위

○ 한옥 전면수선의 경우

- 한옥보호지역 내 :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보호지역 외 :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전면수선은 노후 한옥의 기능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보수행위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 한옥보호지역 내 :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보호지역 외 :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건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신축, 개축, 재축과 증축의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에 주 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한옥보호지역 내에 위치한 한옥의 외관 등을 수선하는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12] 대구광역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전면수선의 경우	한옥보호지역 내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용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보호지역 외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건축하는 경우	한옥보호지역 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용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보호지역 외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한옥보호지역 내 한옥외관 수선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지원

라. 광주광역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제12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하는 경우

-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기존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신축은 제외함)

※ 8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기존 한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위의 내용 제외)

-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일단의 범위 안에 있는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지역(전체 개발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해당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



[표 2-13] 광주광역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하는 경우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기존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 (신축 제외)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축은 제외함)
기존 한옥의 유지관리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위의 내용 제외
한옥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지역의 경우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전체 개발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마. 인천광역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제13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하거나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해당)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경우(위의 내용 제외)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14] 인천광역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위의 내용 제외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바.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제13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하거나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해당)

-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경우(위의 내용 제외)

-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15]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위의 내용 제외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사. 경기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1) 경기도(제14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해당)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경우(위의 내용 제외)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16] 경기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위의 내용 제외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

(2) 경기도 수원시(제17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표 참고)

○ 한옥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억1천만 원까지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표 참고)

○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한옥 수선 등의 경우 제외)

-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17] 경기도 수원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및 내부 수선 등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범위 안에서 지원

[표 2-18] 경기도 수원시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표

건축연면적	보 조 금 액		비고
	신·개축	수선(리모델링)	
70㎡미만	80,000,000원	60,000,000원	
70㎡이상 ~ 90㎡미만	95,000,000원	70,000,000원	
90㎡이상 ~ 110㎡미만	120,000,000원	90,000,000원	
110㎡이상	150,000,000원	110,000,000원	

(3) 경기도 광주시(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한옥 수선 등의 경우 제외)

-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19] 경기도 광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및 내부 수선 등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범위 안에서 지원



(4)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제4조)

□ 지원범위

○ 200제곱미터 이하의 전통한옥 건축물

- 건축공사비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제곱미터당 35만원(총 7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표 2-20]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200제곱미터 이하의 전통한옥 건축물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건축공사비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원

(5) 경기도 평택시(제5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21] 경기도 평택시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표

건축연면적	보 조 금 액
85㎡미만	20,000,000원
85㎡이상 ~ 100㎡미만	25,000,000원
100㎡이상	30,000,000원

○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한옥 수선 등의 경우 제외)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22] 경기도 평택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범위 안에서 지원

(6) 경기도 여주시(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한옥 수선 등의 경우 제외)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23] 경기도 여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범위 안에서 지원

(7) 경기도 남양주시(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한옥 수선 등의 경우 제외)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24] 경기도 남양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범위 안에서 지원

(8) 경기도 포천시(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한옥 수선 등의 경우 제외)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25] 경기도 포천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범위 안에서 지원

아. 강원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1) 강원도 춘천시(제6조)

□ **지원범위**

○ 한옥마을 내에서의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26] 강원도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표

건축연면적	보 조 금 액(신축, 전부개축, 재축)
60㎡이상 ~ 70㎡미만	5,000만원
70㎡이상 ~ 75㎡미만	6,000만원
75㎡이상 ~ 80㎡미만	6,500만원
80㎡이상 ~ 85㎡미만	7,000만원
85㎡이상 ~ 90㎡미만	7,500만원
90㎡이상	8,000만원

○ 한옥의 대수선인 경우(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27] 강원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마을 내에서의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의 대수선인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2) 강원도 평창군(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자. 충청북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1) 충청북도(제13조)

□ **지원범위**

○ 보조금



- 한옥신축 등 총공사비에 대하여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따른다. 단,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 보조금과 융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한옥마을의 지원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위 내용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충청북도 청주시(제16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 등의 경우(개축 포함)

-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대수선 등의 경우(한식기와 잇기 등)

-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한옥대수선 등의 경우 제외)

-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28] 충청북도 청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 등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대수선 등의 경우 (한식기와 잇기 등)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 비용의 범위 안에서 지원

(3) 충청북도 충주시(제7조)

□ **지원범위**

○ 신축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대수선의 경우(한식 기와 잇기 등)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 외관 및 내부 보수 경우(대수선의 경우 제외)

- 공사비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29] 충청북도 충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신축 등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대수선의 경우 (한식 기와 잇기 등)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외관 및 내부 보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범위 안에서 지원

(4) 충청북도 단양군(제11조)

□ **지원범위**

○ 한옥 신·개축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대수선의 경우(한식기와 잇기 등)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외관 보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30] 충청북도 단양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개축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대수선의 경우 (한식기와 잇기 등)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보수 경우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차. 충청남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1) 충청남도(제8조)

□ **지원범위**

○ 보조금

-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31] 충청남도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증축·대수선의 경우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따른다. 단,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 한옥마을의 지원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위 내용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충청남도 아산시(제9조)

□ **지원범위**

○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증축·대수선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32] 충청남도 아산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증축·대수선 등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3) 충청남도 서산시(제12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증개축·대수선 등의 경우

-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한옥 증개축·대수선 등의 경우 제외)

-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33] 충청남도 서산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증개축·대수선 등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증개축·대수선의 경우는 제외

(4) 충청남도 천안시(제8조)

□ **지원범위**

○ 한옥건축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34] 충청남도 천안시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

건축연면적	보 조 금 액
85㎡미만	2천만 원까지
85㎡이상 ~ 100㎡미만	2천5백만 원까지
100㎡이상	3천만 원까지

○ 한옥수선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35] 충청남도 천안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건축연면적에 따라 다름)
한옥 수선 등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5) 충청남도 홍성군(제18조)

□ **지원범위**

○ 한옥건축의 경우(증축·개축·재축을 포함)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36] 충청남도 홍성군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

건축연면적	보 조 금 액
85㎡미만	2천만 원까지
85㎡이상 ~ 100㎡미만	2천5백만 원까지
100㎡이상	3천만 원까지

○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인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37] 충청남도 천안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건축연면적에 따라 다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인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카. 전라북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1) 전라북도(제14조)

□ **지원범위**

○ 신축의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

-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38] 전라북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인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

(2) 전라북도 전주시-1(제4조)

□ 지원범위

○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을 수선·대수선을 하는 경우

-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을 신축·증축·개축을 하는 경우

-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경관조성 시설물(담장, 대문, 조경 등)을 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만 해당)

- 시설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00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39]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을 수선·대수선을 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단독주택 용도의 경우 해당 공사비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을 신축·증축·개축인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단독주택 용도의 경우 해당 공사비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
경관조성 시설물을 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	최대 800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



(3) 전라북도 전주시-2(제9조)

□ **지원범위**

○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수선·대수선을 하는 경우

-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을 하는 경우

-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전주한옥마을에서 경관조성 시설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고 전통도시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만 해당)

- 시설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00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 시설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200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40]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

담장, 대문, 조경 등의 경우	간판시설의 경우
800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200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41]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전통도시한옥을 수선·대수선을 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단독주택 용도의 경우 해당 공사비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인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단독주택 용도의 경우 해당 공사비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
경관조성 시설물을 전통도시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	최대 800백만 원 또는 200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 또는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4) 전라북도 완주군(제11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개축 포함)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외관 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표 2-42] 전라북도 완주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개축포함) 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외관 수선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5) 전라북도 임실군(제7조)

□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지원 대상

-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인 경우
- 증·개축·대수선인 경우
- 한옥의 외관 및 내부보수(증·개축·대수선 제외)인 경우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

[표 2-43] 전라북도 임실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증축·개축·대수선인 경우	
한옥의 외관 및 내부보수인 경우	



타. 전라남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1) 전라남도(제3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의 경우

- 한옥구역에 건축하는 한옥 : 총 공사비의 범위 안에서 1천5백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융자금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원까지 지원
- 한옥구역 외 건축하는 한옥 : 총 공사비의 범위 안에서 2억 원까지 융자금으로 지원

○ 전통한옥 개보수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범위 안에서 1억 원까지 융자금으로 지원

○ 기반시설사업인 경우

- 총 공사비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표 2-44] 전라남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의 경우	한옥구역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융자금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원까지 지원	총 공사비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구역 외	최대 2억 원까지 융자지원	
전통한옥 개보수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지원	총 공사비의 범위 안에서 지원
기반시설사업인 경우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범위 안에서 지원

(2) 전라남도 광양시(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신·개축인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3) 전라남도 나주시(제3조)

□ 지원범위

○ 한옥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등 지원한도액(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신청한 건에 한정)

- 한옥 신축의 경우 - 최대 4,500만원까지(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표 2-45] 전라남도 나주시 한옥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단위 : 평방미터/원)

바닥면적	지원금액	바닥면적	지원금액
50	30,000,000	68	38,100,000
51	30,450,000	69	38,550,000
52	30,900,000	70	39,000,000
53	31,350,000	71	39,450,000
54	31,800,000	72	39,900,000
55	32,250,000	73	40,350,000
56	32,700,000	74	40,800,000
57	33,150,000	75	41,250,000
58	33,600,000	76	41,700,000
59	34,050,000	77	42,150,000
60	34,500,000	78	42,600,000
61	34,950,000	79	43,050,000
62	35,400,000	80	43,500,000
63	35,850,000	81	43,950,000
64	36,300,000	82	44,400,000
65	36,750,000	83	44,850,000
66	37,200,000	84	45,000,000
67	37,650,000	85이상	45,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지원한도액



-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최대 8,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

[표 2-46] 전라남도 나주시 전통한옥지구(신축)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제2호가목 관련)

(단위 : 평방미터/원)

바닥면적	지원금액	바닥면적	지원금액
50	55,250,000	68	70,600,000
51	56,100,000	69	71,400,000
52	57,000,000	70	72,300,000
53	57,800,000	71	73,100,000
54	58,700,000	72	74,000,000
55	59,500,000	73	74,800,000
56	60,400,000	74	75,700,000
57	61,200,000	75	76,500,000
58	62,100,000	76	77,400,000
59	62,900,000	77	78,200,000
60	63,800,000	78	79,100,000
61	64,600,000	79	79,900,000
62	65,500,000	80	80,800,000
63	66,300,000	81	81,600,000
64	67,200,000	82	82,500,000
65	68,000,000	83	83,300,000
66	68,900,000	84	84,200,000
67	69,700,000	85이상	85,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

[표 2-47] 전라남도 나주시 전통한옥지구(대수선)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제2호나목 관련)

(단위 : 원)

공사비	지원금액	공사비	지원금액
10,000,000	7,000,000	36,000,000	25,200,000
12,000,000	8,400,000	38,000,000	26,600,000
14,000,000	9,800,000	40,000,000	28,000,000
16,000,000	11,200,000	42,000,000	29,400,000
18,000,000	12,600,000	44,000,000	30,800,000
20,000,000	14,000,000	46,000,000	32,200,000
22,000,000	15,400,000	48,000,000	33,600,000
24,000,000	16,800,000	50,000,000	35,000,000
26,000,000	18,200,000	52,000,000	36,400,000
28,000,000	19,600,000	54,000,000	37,800,000
30,000,000	21,000,000	56,000,000	39,200,000
32,000,000	22,400,000	58,000,000	40,600,000
34,000,000	23,800,000	60,000,000	42,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4천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 한옥 외관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

○ 그 밖에 지역에서의 지원한도액(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

-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최대 4,500만원까지(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표 2-48] 전라남도 나주시 한옥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단위 : 평방미터/원)

바닥면적	지원금액	바닥면적	지원금액
50	30,000,000	68	38,100,000
51	30,450,000	69	38,550,000
52	30,900,000	70	39,000,000
53	31,350,000	71	39,450,000
54	31,800,000	72	39,900,000
55	32,250,000	73	40,350,000
56	32,700,000	74	40,800,000
57	33,150,000	75	41,250,000
58	33,600,000	76	41,700,000
59	34,050,000	77	42,150,000
60	34,500,000	78	42,600,000



61	34,950,000	79	43,050,000
62	35,400,000	80	43,500,000
63	35,850,000	81	43,950,000
64	36,300,000	82	44,400,000
65	36,750,000	83	44,850,000
66	37,200,000	84	45,000,000
67	37,650,000	85이상	45,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표 2-49] 전라남도 나주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마을, 한옥보존마을, 시장이 인정한 구역(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		
한옥 신축의 경우	최대 4,500만 원까지 보조지원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지원한도액		
한옥 신축 (개축포함)의 경우	최대 8,500만 원까지 보조지원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최대 4,200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 표 참고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최대 2,100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표 참고
그 밖에 지역에서의 지원한도액(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		
한옥 신축 (개축 포함)의 경우	최대 4,500만 원까지 보조지원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4) 전라남도 목포시-1(제15조)

□ **지원범위**

○ 한옥신축(개축 포함)인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대수선(한식기와 잇기)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외관의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50] 전라남도 목포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개축포함) 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하는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외관 수선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5) 전라남도 목포시-2(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신·개축인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대수선인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 수선인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51] 전라남도 목포시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개축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대수선인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조지원	
수선인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6) 전라남도 순천시(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신·개축인 경우

- 건축물 바닥 면적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52] 전라남도 순천시 한옥보조금 지원기준 (제9조 관련)

(단위 : 평방미터/원)

바닥면적	지원금액	바닥면적	지원금액
50	10,000,000	68	12,700,000
51	10,150,000	69	12,850,000
52	10,300,000	70	13,000,000
53	10,450,000	71	13,150,000
54	10,600,000	72	13,300,000
55	10,750,000	73	13,450,000
56	10,900,000	74	13,600,000
57	11,050,000	75	13,750,000
58	11,200,000	76	13,900,000
59	11,350,000	77	14,050,000
60	11,500,000	78	14,200,000
61	11,650,000	79	14,350,000
62	11,800,000	80	14,500,000
63	11,950,000	81	14,650,000
64	12,100,000	82	14,800,000
65	12,250,000	83	14,950,000
66	12,400,000	84	15,000,000
67	12,550,000	85이상	15,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半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숫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 대수선인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 수선인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7) 전라남도 여수시(제9조)

□ **지원범위**

○ 한옥을 신·개축하는 경우

-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외관을 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53] 전라남도 여수시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기준 (제2조 관련)

(단위 : 원)

바닥면적		지원금액	비 고
신·개축	50㎡ ~ 60㎡	10,000,000	
	61㎡ ~ 70㎡	13,000,000	
	71㎡ 이상	15,000,000	
대수선 49㎡이상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등)		15,000,000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
외관수선 49㎡이상 (담장 10m이상 등)		10,000,000	

(8) 전라남도 강진군(제17조)

□ **지원범위**

○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백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54] 전라남도 강진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건 축 면 적	보 조 금 액		비 고
	신.개축	수 선	
수 선 45㎡미만		8,000,000원	
수 선 45㎡이상		10,000,000원	
신.개축 70㎡미만	16,000,000원		
70㎡이상 ~ 90㎡미만	18,000,000원		
90㎡이상~	20,000,000원		



(9) 전라남도 고흥군(제5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개축 포함)하는 경우

-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지원

(10) 전라남도 곡성군(제9조)

□ **지원범위**

○ 한옥을 신축(개축 포함)하는 경우

-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표 2-55] 전라남도 곡성군 한옥보조금 지원기준

바닥면적	지원금액	바닥면적	지원금액
50	10,000,000	68	12,700,000
51	10,150,000	69	12,850,000
52	10,300,000	70	13,000,000
53	10,450,000	71	13,150,000
54	10,600,000	72	13,300,000
55	10,750,000	73	13,450,000
56	10,900,000	74	13,600,000
57	11,050,000	75	13,750,000
58	11,200,000	76	13,900,000
59	11,350,000	77	14,050,000
60	11,500,000	78	14,200,000
61	11,650,000	79	14,350,000
62	11,800,000	80	14,500,000
63	11,950,000	81	14,650,000
64	12,100,000	82	14,800,000
65	12,250,000	83	14,950,000
66	12,400,000	84	15,000,000
67	12,550,000	85이상	15,000,000

○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외관을 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56] 전라남도 곡성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개축포함)인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인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수선인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지원	

(11) 전라남도 담양군(제5조)

□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최대 1천5백만원까지 군비보조금 지원

[표 2-57] 전라남도 담양군 한옥보조금 지원기준

바닥면적	지원금액	바닥면적	지원금액
50	10,000,000	68	12,700,000
51	10,150,000	69	12,850,000
52	10,300,000	70	13,000,000
53	10,450,000	71	13,150,000
54	10,600,000	72	13,300,000
55	10,750,000	73	13,450,000
56	10,900,000	74	13,600,000
57	11,050,000	75	13,750,000
58	11,200,000	76	13,900,000
59	11,350,000	77	14,050,000
60	11,500,000	78	14,200,000
61	11,650,000	79	14,350,000
62	11,800,000	80	14,500,000
63	11,950,000	81	14,650,000
64	12,100,000	82	14,800,000
65	12,250,000	83	14,950,000
66	12,400,000	84	15,000,000
67	12,550,000	85이상	15,000,000



(12) 전라남도 구례군(제4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개축 포함)하는 경우

-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지원

-

(13) 전라남도 무안군(제17조)

□ **지원범위**

○ 한옥신축(개축·수선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백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14) 전라남도 보성군(제9조)

□ **지원범위**

○ 한옥신축(개축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15) 전라남도 영광군(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하는 경우

-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16) 전라남도 영암군(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신·개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58] 전라남도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기준

바닥 면적	지원금액	바닥 면적	지원금액
50	10,000,000	68	12,700,000
51	10,150,000	69	12,850,000
52	10,300,000	70	13,000,000
53	10,450,000	71	13,150,000
54	10,600,000	72	13,300,000
55	10,750,000	73	13,450,000
56	10,900,000	74	13,600,000
57	11,050,000	75	13,750,000
58	11,200,000	76	13,900,000
59	11,350,000	77	14,050,000
60	11,500,000	78	14,200,000
61	11,650,000	79	14,350,000
62	11,800,000	80	14,500,000
63	11,950,000	81	14,650,000
64	12,100,000	82	14,800,000
65	12,250,000	83	14,950,000
66	12,400,000	84	15,000,000
67	12,550,000	85이상	15,000,000

○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59] 전라남도 영암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개축 하는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수선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지원	

(17) 전라남도 신안군(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개축 포함)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낙도지역(본도 제외)의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외관을 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60] 전라남도 신안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 (개축포함)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인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외관 수선인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18) 전라남도 완도군(제13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개축 포함)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외관을 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61] 전라남도 완도군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 (개축포함)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인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외관 수선인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지원	

(19) 전라남도 장성군(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신·개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62] 전라남도 장성군 한옥 면적별 군비 보조금 지원기준 (제9조제5항 관련)

(단위 : ㎡ / 원)

바닥면적	지원금액	바닥면적	지원금액
50	10,000,000	68	12,700,000
51	10,150,000	69	12,850,000
52	10,300,000	70	13,000,000
53	10,450,000	71	13,150,000
54	10,600,000	72	13,300,000
55	10,750,000	73	13,450,000
56	10,900,000	74	13,600,000
57	11,050,000	75	13,750,000
58	11,200,000	76	13,900,000
59	11,350,000	77	14,050,000
60	11,500,000	78	14,200,000
61	11,650,000	79	14,350,000
62	11,800,000	80	14,500,000
63	11,950,000	81	14,650,000
64	12,100,000	82	14,800,000
65	12,250,000	83	14,950,000
66	12,400,000	84이상	15,000,000
67	12,550,000	**※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합계임**	

○ 신규단지로 조성되는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전원마을 등의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가능

※ 사업지정고시일 1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에 한함.

(20) 전라남도 진도군(제18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개축 포함)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외관을 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63] 전라남도 진도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개축포함) 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 하는 경우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외관 수선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원	

(21) 전라남도 함평군(제10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하는 경우

-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22) 전라남도 해남군(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개축 포함)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외관을 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64] 전라남도 해남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개축포함) 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 하는 경우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외관 수선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23) 전라남도 화순군(제11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개축 포함)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

(24) 전라남도 장흥군(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개축 포함)하는 경우(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및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지원

[표 2-65] 전라남도 장흥군 한옥 면적별 군비 보조금 지원기준

바닥면적	지원금액	바닥면적	지원금액
50	10,000,000	68	12,700,000
51	10,150,000	69	12,850,000
52	10,300,000	70	13,000,000
53	10,450,000	71	13,150,000
54	10,600,000	72	13,300,000
55	10,750,000	73	13,450,000
56	10,900,000	74	13,600,000
57	11,050,000	75	13,750,000
58	11,200,000	76	13,900,000
59	11,350,000	77	14,050,000
60	11,500,000	78	14,200,000
61	11,650,000	79	14,350,000
62	11,800,000	80	14,500,000
63	11,950,000	81	14,650,000
64	12,100,000	82	14,800,000
65	12,250,000	83	14,950,000
66	12,400,000	84	15,000,000
67	12,550,000	85이상	15,000,000

○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

○ 한옥 외관을 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

[표 2-64] 전라남도 장흥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개축포함) 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 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외관 수선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파. 경상북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1) 경상북도(제12조)

□ **지원범위**

○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2) 경상북도 경주시(제12조)

□ **지원범위**

○ 전통한옥마을 지구 내 개인이 소유하는 전통한옥으로 대수선·수선하거나 전통한옥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 공사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이 경우 외관 수선 등의 소요비용이 1/2 이상이어야 한다.

(3) 경상북도 김천시(제9조)

□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1)경상북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경우, 총 보조금의 합산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한다.

○ 보조금 지원 대상

-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한옥 신축, 증·개축

※ 다만, 증축의 경우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이전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4) 경상북도 문경시(제10조)

□ **지원범위**

○ 한옥마을 등에서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1)경상북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총 보조금의 합산액은 7천만원 이하로 한다.

○ 한옥마을 외 한옥 건축 등을 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1)경상북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총 보조금의 합산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한다.

○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마을 등에서 한옥을 수선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보조금 지원 대상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지원한다.
-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증·개축에 한한다.

[표 2-67] 경상북도 문경시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마을 등에서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마을 외 한옥 건축 등을 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지원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증·개축 한함.	

(5) 경상북도 안동시(제4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다만, 안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 한옥 수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총 공사비(내부수선을 포함할 경우 내부수선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다만, 안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표 2-68] 경상북도 안동시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하는 경우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6) 경상북도 영주시(제68조의 4)

□ **지원범위**

○ 보조금 교부규모

- 지붕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까지 지급한다.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전인 경우

- 1제곱미터당 단독주택의 경우 30만원 이내,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1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기존의 건축물 지붕을 수리하는 경우

- 1제곱미터당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7) 경상북도 포항시(제9조)

□ **지원범위**

○ 보조금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1)경상북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총 보조금의 합산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한다.

○ 보조금 지원 대상

-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한옥 신축, 증·개축

※ 다만, 증축의 경우 금번에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이전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8) 경상북도 고령군(제6조)

□ 지원범위

○ 보조금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의 단독주택으로서 일반형 주택과 한옥형주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일반형 주택(바닥면적 3.3제곱미터 당 기준)

-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45만원
- 경량철골판넬조 : 36만원
- 기타 구조 : 45만원
- 한옥형 주택(바닥면적 3.3제곱미터 당 기준)
-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 : 75만원
- 전통한옥형 주택 : 100만원

※ 단,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경우는 3.3제곱미터당 125만원

[표 2-69] 경상북도 고령군 한옥 보조금 지원기준

일반형 주택		한옥형 주택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45만원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	75만원
경량철골판넬조	36만원	전통한옥형 주택	100만원
기타 구조	45만원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경우는 125만원	

(9) 경상북도 성주군(제7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수선 등 외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보수하는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70] 경상북도 성주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지원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보수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 제외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10) 경상북도 예천군(제7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내부 수선을 포함할 경우 내부수선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표 2-71] 경상북도 예천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하는 경우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11) 경상북도 의성군(제14조)

□ 지원범위

○ 한옥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하는 경우(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제외)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72] 경상북도 의성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제외

(12) 경상북도 청송군(제7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증·개축 포함)의 경우

-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하는 경우(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제외)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73] 경상북도 청송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 (증·개축 포함)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제외

(13) 경상북도 칠곡군(제7조)

□ 지원범위

○ 보조금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1)경상남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경우, 총 보조금의 합산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한다.

○ 보조금 지원 대상

-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 증·개축·대수선
- 한옥의 외관 및 내부보수(증·개축·대수선 제외)
-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전기·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경비에 소요되는 비용
-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하. 경상남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1) 경상남도(제9조)

□ **지원범위**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신축(개축 포함)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지원 및 융자지원
-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지원 및 융자지원

○ 기존 한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제외)

-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및 융자지원

○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 총 공사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지원 및 융자지원

[표 2-74] 경상남도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을 신축(개축 포함)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기존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신축, 개축 제외
기존 한옥의 유지·관리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제외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2) 경상남도 거제시(제5조)

□ 지원범위

○ 신·개축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대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75] 경상남도 거제시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신·개축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수선의 경우	최대 5백만원까지 보조지원	



(3) 경상남도 거창군(제9조)

□ **지원범위**

○ 한옥 신축(증·개축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하는 경우(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제외)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76] 경상남도 거창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한옥 신축(증·개축 포함) 해당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보조지원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 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제외

(4) 경상남도 창녕군(제10조)

□ **지원범위**

○ 신·개축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대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77] 경상남도 창녕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신·개축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수선의 경우	최대 5백만원까지 보조지원	

(5) 경상남도 하동군(제14조)

□ 지원범위

○ 한옥 신·개축의 경우(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대수리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지원

○ 수리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

- 하동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표 2-78] 경상남도 하동군 한옥 수선 및 신축기준

공사내용	지원금액	비고
신·개축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지원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수선의 경우	최대 5백만원까지 보조지원	

[표 2-79] 경상남도 하동군 면적별 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적 용 대 상
대 수 리	건축면적 ㎡당 100천원	최대건축면적 100㎡까지 지원
외관수리	건축면적 ㎡당 50천원	최대건축면적 100㎡까지 지원



□ 분석 및 종합

○ 한옥 신축 및 수선 지원 사업비

- 신축 : 2천만원 지원 25곳(35.7%)로 가장 많음
- 대수선 : 2천만원 미만 27곳(47.4%)로 가장 많음
- 전남 나주 신축 최대 2억원 지원
  · 읍성내 : (도비 1500만원, 시비8500만원, 융자 1억원)
  · 읍성권 외 : (도비 1500만원, 시비4500만원, 융자1억4천만원)
- 전북도 신축 최대 5천만원, 시군 2천~3천만원지원

[표 2-80] 전북, 전국별 한옥 신축 및 수선 지원 사업비

(단위 : 만원, 곳, %)

구분		내용								
건축	전북	지원금	2천		3천		5천			
		지역	1		1		2			
	전국	지원금	2천 미만	2천	3천	4~4.5천	5천	6천 이상	기타	계
		지역	9	25	10	7	11	6	2	70
		비율	12.6	35.7	14.4	10	15.7	8.7	2.9	100
대수선 (외관)	전북	지원금	2천			3천				
		지역	3			1				
	전국	지원금	2천미만	2천	3천	4천이상	기타	계		
		지역	27	17	3	8	2	57		
		비율	47.4	29.8	5.3	14	3.5	100		
부분 수선	전북	지원금	1천							
		지역	3							
	전국	지원금	5백	1천	2천	기타	계			
		지역	6	24	6	1	37			
		비율	16.2	64.9	16.2	2.7	100			

○ 한옥 지원(범위)

- 신축 시 공사비 ½ 범위 지원이 49곳(70%)으로 가장 많음
- 수선 시 공사비 ½ 범위 지원이 45곳(79%)으로 가장 많음
- 전북은 신축 및 수선 시 ½ 범위 지원 3곳, 2/3은 1곳

[표 2-81] 전북, 전국별 한옥 지원 범위

(단위 : 곳, %)

구분			내용					비고
건축	전북	범위	1/2		2/3			
		지역	3		1			
	전국	범위	1/2	2/3	공사비내	기타	범위무	계
		지역	49	4	3	3	11	70
		비율	70	5.7	4.3	4.3	15.7	100
대수선 (외관)	전북	범위	1/2		2/3			
		지역	3		1			
	전국	범위	1/2	2/3	기타	범위무		계
		지역	45	6	2	4		57
		비율	79	10.5	3.5	7		100
부분 수선	전북	범위	1/2		2/3			
		지역수	2		1			
	전국	범위	1/2	2/3	공사비내	기타		계
		지역	24	1	7	5		37
		비율	64.9	2.7	18.9	13.5		100



2.4 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 제시 사례

가. 건축자산의 방향성

○ 건축자산을 보존 관리 및 활용의 기존 건축자산과 보수 및 신축 등을 통한 미래 건축자산으로 구분

○ 미래 건축자산은 지역의 건축문화 향상과 경쟁력 강화

○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건축유산 이외 비문화재 및 신축한옥 등에 대한 건축자산의 가치 규정 필요

[표 2-82] 시대별 문화재 관리 구분

시기	관리구분		관리주체
근대 이전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
		시·도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
근대		등록문화재	문화재청
	비문화재	비문화재이나 유가치한 건축	-
현대		유가치한 건축	-

○ 건축유산과 자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적, 지역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명확한 가치판단 기준과 정책 지원 필요

○ 건축자산의 명확한 가치판단 기준 및 자원의 특성을 기반으로 미래 건축자산의 예비 수요를 확보하는 방안 필요



[그림 2-9] 건축자산의 시간적 범위와 가치

나. 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 마련 사례

□ 국가 가치판단 기준

○ 국가 기준

- 국가 제시 건축자산 가치 판단 기준은 4개 분야 12개 세부 항목 제시
- 역사적 가치 세부 2개, 경관적 가치 세부 3개, 예술적 가치 세부 3개, 사회·문화적 가치 세부 4개 제시로 12개 항목 제시
- 국가 판단 기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 제시
- 다만 기준 분류에서 한옥, 양옥, 근대, 현대 등 건축이나 시설 유형에 따른 선행 분류가 있어야 구조 등에 따른 세부 내용의 방향성 설정이 가능해 보임

[표 2-83] 국가 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제시

구분	세부내용
역사적가치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잇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경관적가치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예술적가치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저명한 설계자·기술자 등과 관련되었거나 공인된 시상 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사회문화적 가치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가 ~ 다 목까지 사항 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 지자체 기준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 특별시는 국가 가치판단 기준의 분류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세부항목 제시
- 4개 분야 14개 세부 항목을 제시
- 역사적 가치 세부 4개, 경관적 가치 세부 2개, 예술적 가치 세부 4개, 사회·문화적 가치 세부 4개로 14개 항목 제시

[표 2-84] 세종특별자치시 제시 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구분	기준	내용
역사적가치	역사적 연관성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과 관련 있는 자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과 관련 있는 자산
	설립연도	건축물의 건립년도가 오래된 자산
	자산 희소성	현존하는 유사시설이 적어 보전가치가 높은 자산
	시대 상징성	당대의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자산
경관적가치	경관 우수성	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연계활동이 가능한 집한 자산
	지역적 경관 우수성	특색 있는 지역적 경관자산으로서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가진 자산
예술적가치	건축적 선별성	특정한 건축 유형이나 기술, 의미 있는 평면계획 등 조성 당시의 건축사조를 대표하는 자산
	원형 보전성	자산의 외관, 구조 등 보전상태가 높은 자산
	미학적 우수성	건축물 외관의 미적 가치가 높은 자산
	인증된 예술적, 기술적 우수성	자산의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대중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자산
사회문화적 가치	감정적 가치 공유성	지역 주문에게 정신적, 정치적, 국가적, 문화적 감성을 일으키는 자산
	사회적 대표성	지역의 정체성(문화적 다양성, 개방성)과 상징성을 가진 자산
	지역적 특수성	당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자산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자산
	경제적 활용성	자산의 보전, 활용을 통한 경제적가치 및 교육적, 오락적가치 등의 긍정적 효과 정도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기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류 및 항목 제시
- 6개 분야 22개의 세부 항목으로 제시
- 국가기준하고 동일한 역사적 가치 세부 4개, 경관적 가치 세부 4개, 예술적 가치 세부 4개, 사회·문화적 가치 세부 4개로 16개 항목 제시
- 별도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연대 및 희귀성과 온전성을 추가 분류하고 세부 항목을 각각 3개로 6개 항목 추가 제시

[표 2-85] 제주특별자치도 제시 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구분	세부내용
역사적 가치	건축물은 역사적 사건, 인물, 풍습 등과 관련이 있는가?
	용도나 양식에 있어 동시대의 건축물 중 희소성이 있는가?
	건축물의 용도와 공간구성 등이 당대의 생활문화와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건축물의 건립당시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는가?
경관적 가치	개별 건축물이 모여 있어 집단적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가?
	건립당시 오래된 마을 또는 도시 조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가?
	건축물과 공간 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건축물과 공간 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인문경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예술적 가치	건축물은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에 있어 당시 건축적구조적 특징을 대표하는가?
	건축물은 동시대의 건물 중 공간 구성 및 외형 등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명한 설계자, 기술자 등과 관련 되었으나 공인된 시상제도 등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는가?
	기존 건축물과 보수되어진 부분은 잘 어우러져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사회 문화적 가치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는가?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는가?
	건축물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수 있는가?
	건축물은 보수 등을 거쳐 현재도 활용되어 생활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가?
연대 및 희귀성	같은 양식의 보전정도
	공간 구성 및 외형에 독창성
	건축 설계자의 인지도
온전성	공간 구성 및 외형의 원형 유지여부
	건축물의 보수와 원형유지
	건축물의 사용여부



○ 경기도

- 경기도는 제주처럼 국가기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류 및 항목 제시
- 6개 분야 15개의 세부 항목으로 제시
- 국가기준하고 동일한 역사적 가치 세부 2개, 경관적 가치 세부 3개, 예술적 가치 세부 3개, 사회·문화적 가치 세부 4개로 12개 항목 제시
- 별도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원형유지가치 세부 2개, 희소성 가치 세부 1개로 3개 항목 추가 제시

[표 2-86] 경기도 제시 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구분	세부내용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 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경관적 가치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범위 안에 모여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예술적 가치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저명한 설계자·기술자 등과 관련되었거나 공인된 시상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사회 문화적 가치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원형유지 가치	건축자산이 원래의 형태와 자재, 공법(구법, 기법) 등을 유지하여 공통사항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전시켜 온 시간적 가치에 가중 평가
	우수건축자산은 등록문화재의 예비적 의미를 내재하므로,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인 원형유지는 중요한 가치
희소성 가치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거나 사용된 자재, 기법, 형태, 공간구조 등에 가치 부여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4개 분류와 세부 12개 항목으로 국가가치판단 기준 준용

[표 2-87] 대전광역시 제시 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구분	세부내용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 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경관적 가치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예술적 가치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저명한 설계자·기술자 등과 관련되었거나 공인된 시상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사회 문화적 가치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 충청남도

- 충청남도는 국가와 타지자체 가치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을 고려한 분류 및 항목을 제시
- 4개 분야 9개의 세부 항목으로 제시
- 역사적 가치 세부 2개, 경관적 가치 세부 2개, 예술적 가치 세부 2개, 사회·문화적 가치 세부 3개로 9개 항목 제시

[표 2-88] 충청남도 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

구분	세부내용	
역사적 가치	역사적 연관성	역사적 중요한 사건, 인물과 관련 있는 자산
	자산 희소성	용도와 양식이 동시대 건축물 중 희소성이 있는 자산
경관적 가치	경관적 상징성	경관자원으로서의 우수성과 특정 범위 내 건축물 및 상징성을 가진 자산
	경관 차별성	건립당시 오래된 마을 또는 도시 조직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자산
예술적 가치	건축적 대표성	건축미 및 건축기술에 있어 당시 건축적구조적 특징을 대표하고 있는 자산
	인증된 예술적, 기술적 우수성	저명한 설계자, 기술자 등과 관련 있거나 공인된 시상제도 등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은 자산
사회 문화적 가치	감정적 가치 공유성	지역 주민에게 정신적, 정치적, 국가적, 문화적 감성을 일으키는 자산
	지역적 특수성	당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자산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자산
	경제적 활용성	건축물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자산



□ 건축가치판단 기준 분석

○ 국가 가치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 추가

-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가치판단 기준 제시

○ 국가 및 지자체 가치 판단 기준을 보면 세부 내용 중 해석이 어렵거나 모호

○ 특히 한옥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가치판단 기준은 다소 미흡

○ 가치 판단 기준을 마련한 지자체의 구분은 제주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같으나 세부 항목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 및 변경, 추가 제시

○ 건축자산에 대한 예비 가치판단과 본 가치판단의 단계적 결과 도출 필요

○ 가치 판단 기준은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적인 조정을 통한 객관성 필요

○ 실제 현장 조사와 활용성 등을 병행하여 기준 설정 필요

○ 세부 항목의 중복성 및 평가 대상 건축물의 형평성 고려 필요

○ 적용할 세부 항목 기준이 많으면 혼란을 초래

○ 대분류 단계에서 국가 건축자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형을 구분

○ 가치판단 기준(안)전북의 방향성을 제안하면 대분류(건축, 공간환경 등) 중분류(근대, 한옥, 현대), 소분류(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사회문화적가치), 세부내용 및 설명으로 제시

3. 국외 현황 및 사례

3.1 건축자산 기록 관리

□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국가에서 건축자산 기록 관리 및 미래지향적 논의 체계 구축

[표 2-89] 해외 건축자산 기록 관리 전문기관 현황

지역	국가	건축·도시 DB
유럽	네덜란드	네덜란드 건축협회(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NAi)
	독일	독일 건축박물관(Deutsches Architektur Museum. DAM)
	프랑스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 박물관(a Cite de l'Architecture et de la Patrimoine) 20세기 건축기록물보관소(Centre d'Archives d'Architecture du XXe Siecles)
	영국	스코틀랜드 라이트하우스(The Lighthouse)
		영국건축도서관(British Architectural Library, RIBA)
		영국 도시건축위원회(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 Built Environment : CABE)
	핀란드	핀란드건축박물관(Suomen Rakennustaiteen Museo)
아메리카	캐나다	캐나다 건축센터(Canadian Center for Architecture, CCA)
	미국	미국 국립건축박물관(National Building Museum)
아시아	중국	상하이 도시모형전시관(Shanghai Urban Planning Exhibition Center)
	싱가포르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Singapore City Gallery, URA)

*출처 : 유광흠 외(2008), 건축도시공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 캐나다 건축센터(Canadian Center for Architecture, CCA)

○ 1979년에 박물관과 연구센터 기능을 갖추고 몬트리올에 설립

○ 1982년부터 전시운영을 시작하여 10년 후인 1989년에 민간에 개방

○ 1997년 연구기능이 강화되어 공식 시설로 확대

- Visiting Scholars Program, Mellon Senior Fellowships, Mellon



Lecture program(Andrew W. Mellon Foundation과 공동으로 수행

○ 사회에서 건축역할의 공공 인식 제고

○ 건축현장에서 연구 장려, 디자인 실무에서 혁신촉진, 새로운 형식의 문화기관 표방

[표 2-90] 캐나다 건축센터 시설 현황

구분		규모(㎡)	비고
전체		14,900	
수장공간	작업실 및 수장고	-	
전시공간	전시관	-	
교류·연구 공간	오디토리움/ 회의실/ 극장/ 연구센터	-	오디토리움 : 250명 수용 Visiting Scholars Program : 1997년부터 운영
지원공간	카페/ 서점/ 도서관	-	단행본 20만권, 정기간행물 4,500종, 도판/인쇄물 10만점, 사진 55,000점
운영공간	오피스	-	

*출처 : 유광흠 외(2008), 건축도시공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 미국 국립건축박물관(National Building Museum NBM)

○ 1980년 미 연방의회법에 근거하여 워싱턴에 설립

○ '건축, 다자인, 기술, 건설 및 도시계획을 탐구

○ 1985년 몽고메리 액(Montgomery C. Meigs)이 1880년대에 건축된 역사적 건물을 국립건축박물관으로 개조 후 일반에 개방

○ 미국적 주제를 바탕으로 광대한 자료의 웹페이지 구축

○ 2004년 'Building America'라는 명칭 아래 주택과 주거, 상업과 커뮤니티, 대지와 풍경, 대륙 연계라는 네 가지 주제의 상설전시를 시작

□ 스코틀랜드 라이트하우스(The Lighthouse)

○ 건축. 디자인 같은 창의적 산업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장려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에 글래스고(Glasgow)에 설립

○ 동영상 및 웹페이지의 구축을 기반으로 체험 중심으로 전시방식을 바꾸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프랑스 건축문화유산 박물관(Cite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 전문가 및 역사가,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프랑스 건축유산을 알리기 위해 2007년에 설립

○ 기존의 프랑스 문화유산 박물관의 자료는 12세기 건축에서 시작하며, 근·현대 건축자료는 최근 두 세기 동안의 건축동향을 다룸

○ 상호 이질적인 전통과 현대의 자료들을 적절한 관계설정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이해의 기반 마련

○ 아카이브 프랑스 현대건축을 테마로 고건축과 현대건축을 전반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기본방향

○ 이외에도 건축이 소개된 뉴스 등의 각종영상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전시

3.2 건축자산 발굴 및 활용

가. 영국

○ 영국의 헤리티지의 건축자산

- 1983년 국가 유산법을 제정하여 건축자산의 훼손을 막고 보존 관리
- 개별 건축자산 등록하고 관리
- 1984년 법정자문기구 잉글리시 헤리티지 설립
- 개별 건축자산은 약 374,081개의 건축물 등록

[표 2-91]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건축자산 선정 가이드라인

가치	기준
연도	해당 자산의 연도. 지역 특성이나 건물 전통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희소성	지역 내 보존개수가 적어 희소가치가 있는 것
의장적 가치	재료, 지역성 등 디자인적으로 지역적 특이성을 나타내는 것
집합성	해당 자산들간의 관계성 및 시각적 통일성
역사성	지역의 과거 생활상이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것
보존상태	지역유산의 보존상태
역사관련단체	연관된 역사관련 단체의 중요도
경관디자인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경관, 공원 등
랜드마크	지녁 내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사회적 공동체	지역의 정체성, 특수성, 사회성을 나타내는 것

*출처: 잉글리시 헤리티지(https://historicengland.org.uk/advice/hpg/heritage-assets/local-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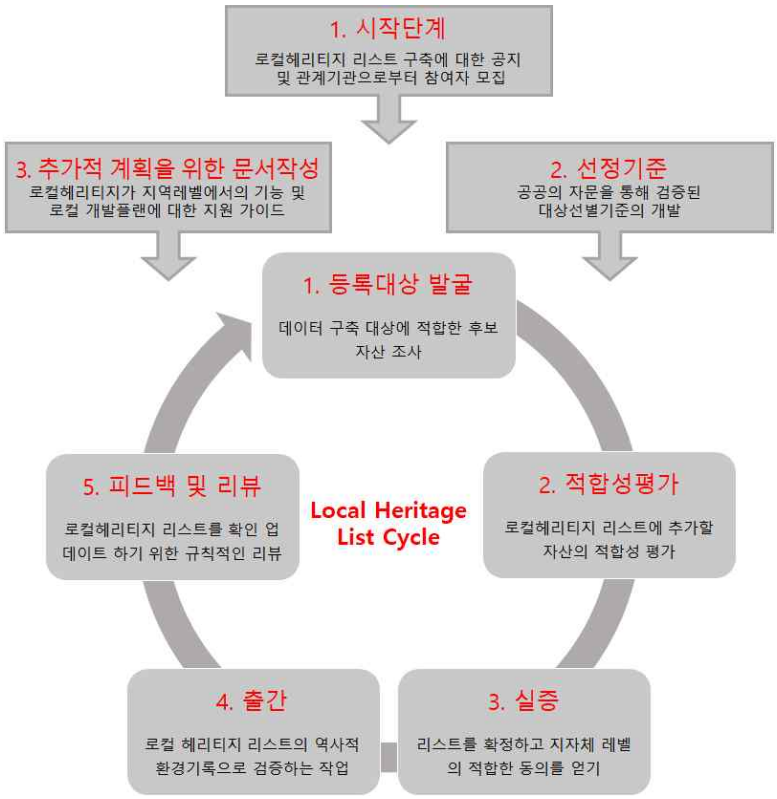
○ 로컬헤리티지 리스트 선정 평가기준

- 지역적 사용(Local Use), 입지성(Location Specific criteria), 문화적경관, 사회적 역사, 집합형상(Patterns of Settlement), 지역적 특성(Local figures) 등의 요소
- 정주패턴은 가로계획, 자산의 집합적 특성(거리)
-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간의 관계성
- 리스트 작성 프로세스는 지속적 업데이트, 자료구축 및 출판을 규칙적으로 반복

○ 잠재적인 것을 지속적 발굴하는 4가지 전략

- 지역성 발현하는 역사적 테마 발굴
- 지역적 특성을 발현하는 자산의 유형
- 관리 가능한 지리적 단위 및 범위
- 리스트 업데이트와 정보구축 전략제시

○ 리스트 작성 프로세스



[그림 2-10] 리스트 작성 프로세스

나. 아일랜드

○ 아일랜드 더블린의 템블바

- 더블린 성곽과 Trinity College 사이의 리피강 남쪽에 위치한 문화지구
- 18~19세기 상업과 전통산업의 중심지에서 1960년대 전통산업 쇠퇴와 교외화로 침체
- 1980년 저렴한 임대비 대신 입주자가 개보수하는 방식으로 소매상인 및 예술가 유입
- 도시개발에 따른 철거 계획을 세입자 중심의 주민협의단체가 역사적 건축자산 보존 활용 계획 수립 재생사업
- 아파트 개발 및 63개 신규 소매점, 7개 호텔, 1,900개 장기적 일자리 창출(John Mccarthy, 1998)



[그림 2-11] 템플바의 가치 있는 건축물과 가로 보존(좌), 보수를 통해 현대적 용도로 재활용(우)

다. 일본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추진상

○ 1988년 당시 구마모토 현의 호소가와 지사는 특색 없고 단조로운 구마모토 현의 도시 미관을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로 만들고자 계획 수립

○ 일명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정책(K.A.P : Kumamoto Art Polis)을 실시

○ 건축물(구조물)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다음의 평가 포인트를 기초로 종합평가를 시행



○ 평가 기준

- 우수한 디자인의 건물
- 새로운 기술적 제안이나 공법을 적용한 건물
- 시공이 양호한 건물
- 시설 활용에 창의성이 돋보이는 건물
- 유지관리가 양호한 건물
- 지역 만들기에 기여가 높은 건물
- 장시간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고려가 우수한 건물

*출처 ::http://www.artpolis.co.kr/technote7/bnoard.php?board=kapmap&sort=wdate&command=body&no=6



[그림 2-12] 구마모토아트폴리스 추진상

※ 출처 : http://www.artpolis.co.kr/technote7

□ 일본의 역사적건조물 지정

○ 보존활용계획을 입안한 후 소유자로부터 시장에 제안을 통해 보존건축물의 등록이 이루어 짐

○ 건축물 현황은 노후상황 등 건축 현황파악, 내진구조 조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안전성 향상 계획, 화재 안전성향상 검토

[표 2-92] 지자체 차원의 역사지원관리 (교토시 사례)

제도유형	지정명	근거법	보조금
지구지정제도	전통건조물군보존지구	문화재법	전통건조물 보조율 4/5 기타건축물 보조율 2/3 보조금 상한액 600만엔
	역사적경관보전지구	교토시경관정비조례	지구내 보조율 1/2~2/3 보조금 상한액 600만엔
	경관정비지구	교토시시가지경관정비조례	지구내 보조율 1/2~2/3 보조금 상한액 600만엔
건조물 지정제도	경관중요건저물	경관법	지정건조물 보조율 2/3 보조금 상한액 1000만엔
	역사적풍치형성건조물	역사마치즈꾸리법	지정건축물 보조율 1/2 보조금 상한액 300만엔
	역사적의장건조물	교토시시가지경관정비조례	지정건축물 보조율 1/2 보조금 상한액 400만엔

[표 2-93] 등록유형문화재와 역사적 건조물의 비교

건조물 점적 보전 유형	등록유형문화재	역사적 경관건조물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목적	문화재 활용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가치기준	1) 국토의 역사적 경관에 기여하는 것 2)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3) 재현하기 어려운 것	1) 역사적평가(연대등) 2) 노후도평가 3) 위험도 평가 4) 이활용도 평가 5) 지역공헌도 평가 (지역경관, 위치 등)	경관적 가치 문화적 가치
대상	건축 후 50년을 경과하는 것	1) 50년이상 경과된 건물 2) 소유자 보전, 활용의사 3) 양호한 경관형성에 기여하는 것 4) 노후화가 심하지 않고 수리, 활용이 가능한 것 5) 국,현,시, 지정문화재 및 등록유형문화재, 경관중요건조물이 아닌것	경관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축물 1) 경관법에 기반한 경관중요건조물 2) 지역에서 지정된 역사전풍치형성건조물 3) 문화재보호조례에 등록된 등록유형문화재 4) 시지정 역사적의장건조물 5) 1)-4)에 준하는 경관적, 문화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건축물
혜택	보존, 수리, 활용을 위한 설계감리비 보조 지역활성화 사업보조 지가세, 고정자산세등 감세		
현상변경	외관의 1/4 이상 변경시 신고제		



○ 경관계획과 경관지구 프로세스

[표 2-94] 역사적건축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프로세스 (교토시사례)

1	**보존활용계획의 입안**	대상건축물의 현황 조사 및 건축물의 지속적 사용을 위한 건축계획 및 건축물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보전활용계획을 입안
2	**소유자로부터 등록 신청**	소유자는 입안된 건축보전활용계획을 첨가하여 보존건축물에 등록 신청서를 신청함
3	**보존건축물에 등록**	시장은 소유주가 제안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보존건축물에 등록하여 건축심의회 동의를 얻어 건축기준법의 적용을 제외시킴
4	**현황변경의 허가 및 공사**	소유자는 보존건축물의 현황을 변경하기 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아야함
5	**보존건축물의 활용, 유지관리**	보존활용계획서에 기재되었던 유지관리등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출처 : 후쿠오카시 홈페이지



자료: 후쿠오카시 홈페이지, 「福岡市歴史的建築物の保存及び活用に関する条例」について
(http://www.city.fukuoka.lg.jp/jutaku-toshi/kenchikushido/life/kyoka_ninntei/rekishiteki.html)

[그림 2-13] 역사적경관건조물등록제도 신청서 및 프로세스



자료: 후쿠오카시 홈페이지, 「福岡市歴史的建築物の保存及び活用に関する条例」について
(http://www.city.fukuoka.lg.jp/jutaku-toshi/kenchikushido/life/kyoka_ninntei/rekishiteki.html)

[그림 2-14] 역사적 건조물의 활용을 위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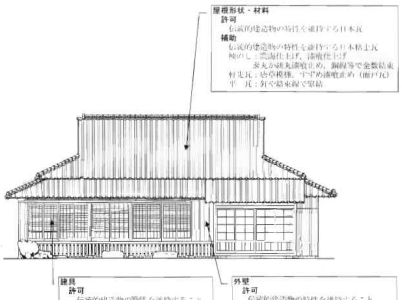


자료: 후쿠오카시 홈페이지, 「福岡市歴史的建築物の保存及び活用に関する条例」について
(http://www.city.fukuoka.lg.jp/jutaku-toshi/kenchikushido/life/kyoka_ninntei/rekishiteki.html)

[그림 2-15] 거리환경 정비사업에 의한 정비시설

○ 가고시마 이즈미시 건조물 관리

- 지구내 지정건물과 비지정 건물 분리 관리
- 외관 및 내부 조경 등에 대한 수리기준 지정
- 지구내 가로경관에 대한 규정은 동일(돌담 및 생울타리)
- 기존 담 노후화 발생시 신규 교체수리 등 지속적 유지관리 계획



지정물 허가수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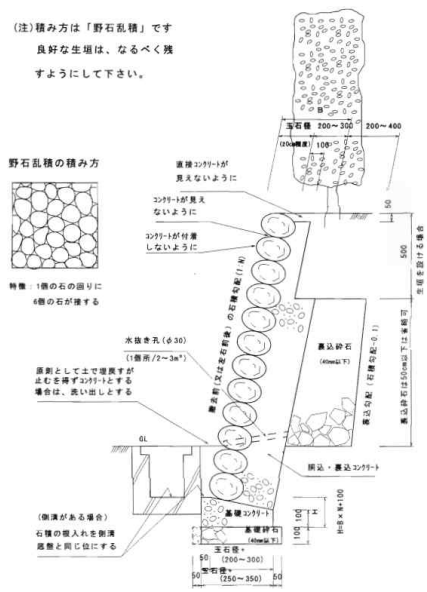
현황사진



지정물외 현상변경허가 기준



이즈미시 역사관(신축)



석축담 허가 수리 기준



이즈미 무사마을 담장



이즈미 무사마을 담장 신규보수

[그림 2-16] 가고시마 이즈미시 건조물 관리

4. 분석 및 종합

가. 국내

○ 건축자산 법률 시행 이후 5년이 되고 국가는 건축자산 진흥계획수립

○ 건축자산에 대한 정책 수립에 따른 경북 등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가 있는 일부 지자체는 미온적 대응

○ 일부 시군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에 대해 들어본 적 없고 진행 계획도 없는 의견'을 보임

○ 반면 서울, 세종, 제주, 전남 등은 빠르게 정부 정책에 대응을 하면서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

○ 건축자산 가치를 인식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략 추진 필요

○ 공모사업 활성화, 축제, 이벤트, 언론 홍보 프로그램 개발

○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주민 교육, 전문가 양성,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집중화 필요

○ 건축자산 기초조사 연구의 활성화 및 국토교통부 건축자산 기초조사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 권장

나. 국외

○ 건축자산을 활용한 국토 환경 및 지역, 마을의 품격 향상

○ 도시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적 가치 제고

○ 건축자산 및 성공사례를 초기 단계부터 적용하여 국가의 미래건축자산 확보

○ 건축적 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정부 등 주관기관에서 전략적 지원이 기여



다. 종합

□ 세계 많은 도시들이 지역의 건축자산 통한 국토환경의 품격 향상

○ 성공사례들의 공통된 특징은 건축물의 형태를 디자인하고 도입기능을 계획하는 초기단계부터 이 건축물을 통해 국가(도는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마련되었다는 거임

○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건축가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반영

○ 디자인, 우수한 건축공법 등으로 건축된 경우 건축물 자체가 관광자원

○ 건축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또한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 경우와 민간이 공공을 목적으로 한 건축을 연계하여 공공 자산으로서 활용가치 제고

- 민간 기업이 공공에 대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세계적 건축가 안도다다오와 함께 지역의 주요 자원이었던 금속 등을 활용하여 독특하고 흥미로운 건축물들을 조성한 사례임

□ 건축자산 기반 도시재생 및 지역경쟁력 강화

○ 쇠퇴한 산업 도시의 훼손된 건축물의 건축적 가치를 발굴하여 도시의 맥락을 유지하는 건축자산으로 재창조

○ 관광객 유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적 효과 및 고부가가치 창출

-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스페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호주), 마리나 베이 샌드(싱가폴) 등
-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은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활용
- 런던 와핑 프로젝트는 수력발전소를 카페 및 전시관으로 활용
- 산업단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일랜드 더블린 기네스 스토어하우스
- 일본의 아카렌카 창고나 일본 홋카이도의 오타루 운하주변 산책로 및 창고 재활용



화력발전소 런던 테이트 모던



런던 수력발전소 활용한 와핑 프로젝트



더블린 기네스 스토어 하우스



홋카이도 오타루 운하 및 창고

[그림 2-17] 건축자산 기반 도시재생 및 지역경쟁력 강화 사례

Ⅲ 전북 건축자산 현황 조사 및 유형분석

1 전북 한옥 건축자산 정책
2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조사 및 분석

Ⅲ.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현황조사 및 유형 분석

1.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정책

1.1. 한옥 조례 및 정책

1) 한옥 정의

□ 한옥 제도적 정의

[표 3-1] 한옥 제도적 정의

법령	소관부처	내용	제정일 (개정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제2조(정의) 16.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04.2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사.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대통령령 제30733호, 1976.07.20. (2020.06.02.)

○ 건축법 시행령 제 2조(2020. 4. 28. 개정)

-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

○ 한옥조례 수립 배경

- 한옥을 신축하고 보수하는 적용을 위한 완화 규정
- 도시·건축 관계 법령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현대건축을 기준으로 규정
- 이는 한옥의 형태, 재료, 구조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완화규정을 두기 위해 한옥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시



○ 한옥 정의 목적

- 한옥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조건이자 공공적으로 그 가치를 공유
- 한옥의 기본가치인 ‘한식기와’, ‘목구조’, ‘자연재료’, ‘전통양식’을 명시

□ 전라북도 한옥 정의

[표 3-2] 전라북도 지자체별 한옥 정의

한옥의 정의	해당 지자체	제정일	개정일 (2020.08기준)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전라북도	2016.12.30.	-
	전북 임실군	2019.05.13.	-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전북 전주시	2015.12.30.	-
"전통도시한옥"이란 제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전북 전주시	2015.12.30.	2015.12.30.
“한옥”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라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전북 완주군	2010.10.07.	2019.12.19.

□ 타 지방 자치단체 한옥 정의

○ 2002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에서 '전통도시한옥'을 정의가 시발점

○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조례에서 한옥을 정의하기 시작

○ 2009년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한옥 체험업이 추가되면서 한옥 정의

[표 3-3] 타지방 지자체별 한옥 정의

지자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한옥의 정의	해당 지자체	제정일	개정일 (2020.08기준)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2016.10.31.	-
	경기도	2016.01.04.	2018.11.13.
	경기도 광주시	2019.07.12.	-
	경기도 김포시	2019.02.15.	-
	경기도 평택시	2018.12.18.	-
	경기도 여주시	2019.06.24.	-
	경기도 남양주시	2016.06.09.	-
	경기도 포천시	2020.07.01.	-
	강원도 평창군	2017.01.06.	-
	충북 충주시	2012.12.28.	2019.11.01.
	충남 서산시	2019.12.18.	-
	충남 아산시	2020.06.05.	-
	충남 천안시	2017.04.10.	2020.06.01.
	충남 홍성군	2019.04.15.	-
	전라북도	2016.12.30.	-
	전북 임실군	2019.05.13.	-
	전라남도	2016.12.22.	2020.03.16.
	전남 순천시	2008.09.29.	2019.11.12.
	전남 여수시	2007.05.31.	2018.09.18.
	전남 고흥군	2009.01.09.	2019.12.23.
	전남 담양군	2009.04.08.	2020.05.11.
	전남 무안군	2008.10.27.	2020.07.20.
	전남 신안군	2009.08.06.	2017.12.28.
	전남 영암군	2008.01.31.	2019.12.12.
	전남 장성군	2009.06.23.	2018.10.30.
	전남 진도군	2009.04.14.	2019.09.25.
	전남 함평군	2009.01.20.	2020.07.15.
	전남 해남군	2008.06.11.	2019.10.29.
	전남 화순군	2008.03.09.	2019.12.11.
	경북 김천시	2017.11.23.	-
	경북 문경시	2018.01.08.	2019.10.01.
	경북 안동시	2012.06.15.	2018.03.02.
	경북 포항시	2017.05.02.	-
	경북 예천군	2019.05.13.	-
	경북 청송군	2015.12.31.	-
	경북 칠곡군	2018.08.14.	-
	경남 거창군	2015.07.22.	-
	경남 하동군	2012.01.12.	2019.08.30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충북 단양군	2015.05.01.	2019.03.25.
	전남 나주시	2019.11.11.	2020.03.06.
	전남 강진군	2016.10.07.	-
	전남 완도군	2008.09.25.	2016.02.23.
	전남 장흥군	2008.01.22.	2017.12.29.
	경북 의성군	2016.12.30.	2018.10.10.
	경남 창녕군	2011.07.13.	2017.04.03.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남 광양시	2009.05.27.	2017.12.27.
	전남 목포시	2011.10.17.	2015.08.03.
	전남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2007.12.31.	2019.12.23.
	전남 곡성군	2009.04.16.	2019.04.03.
	전남 구례군	2007.11.26.	2010.12.31.
	전남 보성군	2009.03.23.	2019.04.10.
	전남 영광군	2009.04.20.	2018.12.28.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2.12.31.	-
	충북 청주시	2014.07.01.	2014.12.2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전북 전주시	2015.12.30.	-
	경남 거제시	2011.05.30.	2015.11.24.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9.12.31.	2018.05.25.
“한옥”이란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은 집으로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 재료로 마감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부상광역시 기장군	2013.07.25.	2017.07.07.
“한옥”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라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전북 완주군	2010.10.07.	2019.12.19.
전통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 또는 초가를 사용한 건축물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경북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2010.05.12.	2018.02.23.
"전통도시한옥"이란 제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전북 전주시	2015.12.30.	2015.12.30.

"한옥형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 :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골기와 잇기로 합각, 맞배또는 우진각형식 등의 경사형 지붕형태의 주택 나. 전통한옥형 주택 :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이거나 목구조 이외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한옥 형태를 하고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골기와 잇기를 한 전통미를 갖춘 주택	경북 고령군	2009.12.24.	2019.03.29.
"공공한옥"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 각 호의 적용을 받는 수원시 소유의 건물 중에서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경기도 수원시	2019.03.29.	-
"전통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 방식이고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2006.06.05.	2020.01.03.

□ 한옥정의 종합 및 분석

○ 한옥정의 지정 지자체 수

- 2002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에서 '전통도시 한옥'을 정의한 것이 시초
- 한옥 정의 63건 중 전남 23건(36.5%) 가장 많고, 전북은 5건(7.9%)으로 조사됨

[표 3-4] 한옥정의 지정 지자체 수

용어구분	건수	특징	지역	비고
한옥	58	신규 사업	전남 23건, 경북 8건, 경기도 7건, 전북, 충남, 경남 각 4건, 충북 3건, 부산, 경남, 강원 각 1건	"한옥"이란
○○한옥	5	지역한옥 기반 사업	경주, 전주, 수원, 경기도광주(남한산성)	"전통한옥", "공공한옥" "한옥형 주택"이란

○ 주요 사용 용어

- 주요 사용 용어를 구주, 양식, 재료로 구분하여 조사
- 구조는 목구조(목조)가 58곳으로 92.1%의 지자체에서 사용
- 양식은 전통양식을 40곳으로 63.5%의 지자체에서 사용
- 재료는 한식기와를 표기한 곳이 17곳으로 26.9%의 지자체에서 사용



- 초기 재료의 세부적 표기를 하였으나 최근은 목조, 한식지붕틀로 정의

[표 3-5] 주요 사용 용어

(단위 : 곳, %)

구분	주요 사용 용어					
구조	기둥	보	목구조(목조)	주요구조	한식지붕틀	지자체 수
	40	40	58	42	41	63
	63.5	63.5	92.1	66.7	65.1	%

양식	전통양식	전통미	지자체 수
	40	2	63
	63.5	3.2	%

재료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자연재료	지자체 수
	17	3	3	3	3	63
	26.9	4.8	4.8	4.8	4.8	%

□ 소결

○ 한옥의 정의를 나타내는 용어를 보면 기둥, 보, 목구조, 주요구조, 한식지붕틀이라는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음

○ 구조 부분에서 목구조(목조)를 언급하여 재료적 부분까지 같이 표현

○ 양식에서 전통미보다는 전통양식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뚜렷한 용어 사용하고 있어 한옥을 인지하기 위한 주요한 부분으로 보임

○ 재료는 한식기와 등 지붕의 재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지붕선과 면이 보이는 한옥의 특성상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이는 한옥의 주요 구조재가 목재임을 전제하는 것과 벽체 등은 현대적 재료 적용이 에너지등급 등 건축조건 충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전라북도 한옥정의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로 전북 시군 한옥정의 수립시 참고 필요

○ 한옥 지원시 공평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대표적 정의와 더불어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다만 중복 등을 피하는 용어 정리가 필요

2) 한옥지원 조례

□ 전라북도 한옥지원 조례

[표 3-6] 전라북도 한옥지원 조례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소관부서
전라북도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6.12.30. (2020.05.29.)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전라북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30.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2016.11.30. (2019.11.26.)	문화관광산업과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5.15.	건축과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2015.12.30.	한옥마을지원과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2014.04.28. (2019.03.25.)	문화유산관광과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2010.10.07. (2019.12.19.)	건축과 건축행정
	임실군 한옥 지원 조례	2019.05.31.	주택관리팀

□ 한옥지원 소관부서

○ 국내사례에 언급한 지자체와 전라북도 한옥조례를 비교한 결과

○ 소관 부서

- 소관 부서는 건축과 30곳(30.9%)으로 가장 많고 문화관광 16곳(16.5%)
- 전북은 주택, 문화관광, 건축, 한옥 등 부서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

[표 3-7] 전북, 전국별 한옥지원 소관부서

(단위 : 개소, %)

전북	주택	문화관광	건축	한옥	그 외(방호예방)
	2	2	2	1	1

전국	건축	문화관광	도시	민원	건축허가	주택	한옥	그 외	계
	30	16	15	8	7	7	3	11	97
비율	30.9	16.5	15.5	8.5	7.1	7.1	3.1	11.3	100

※ 그 외 소관부서 목록 : 복지, 경제, 기획감사, 마케팅, 미래전략, 방호예방, 복원, 정책, 주거개선, 지역개발



○ 특수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전북의 전주시와 같이 기존 한옥자원을 보유한 지역은 별도의 소관 부서를 운영

[표 3-8] 전북, 전국별 특수 지원 조례 소관부서

(단위 : 개소)

전북	한옥체험마을			소방안전관리	
	2			1	
전국	**한옥체험마을**	**한옥마을**	**한옥학교**	**한옥문화·박물관**	**그 외**
	7	6	2	2	5

※ 그 외 특수 목록 : 남한산성, 소방안전관리, 한옥견본주택, 한옥민박, 전통한옥수련관

○ 한옥조례에 대한 소관부서를 보면 건축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나타남

○ 부서별 업무에 차이가 있어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건축 등에 한계

○ 전라북도 역시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소관 부서가 다양하게 나타남

○ 한옥을 거주라는 측면에서 주택 또는 건축과에서 소관 하는 것이 적합

○ 다만, 한옥 숙박 등 체험한옥의 공사는 주택 또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완공 후 문화관광과에서 운영관리하는 협업 필요

○ 또는 건축전문가와 문화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한옥전담 부서를 별도 운영하여 한옥건축자산 발굴 및 관리, 신축, 보수, 활용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 권장

□ 한옥지원 예산 및 범위

○ 전북도 신축 최대 5천만원, 시군 2천~3천만원지원

○ 한옥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중 신축은 2천만원이 25곳(35.7%)으로 가장 많고 대수선은 2천만원 미만이 27곳(47.4%)로 나타남

○ 한옥예산을 지원하는 곳 중 전남 나주시는 신축할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2억원을 지원

- 읍성내 : (도비 1500만원, 시비8500만원, 융자 1억원)
- 읍성권 외 : (도비 1500만원, 시비4500만원, 융자1억4천만원)

○ 지원 범위는 전북이 신축 및 수선 시 ½ 범위 지원 3곳으로 70%가 넘는 지역에서 전북과 동일한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조사 및 분석

2.1 전북 건축자산 연구 문헌 고찰

□ 건축자산 현황

○ 전북연구원에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전산자료를 근거로 분석

○ 세움터 DB구축 미완 및 문화재 지정 등으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임

○ 1차 세움터 건축물DB(건축물 대장)를 기준(2015.12.31. 기준, 1965.12.31. 이전 승인)을 대상으로 선정

○ 전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내 1965년 이전 건축된(사용승인, 건축승인일 기준) 건축물은 95,077동

○ 전북연구원의 건축자산에 한옥 및 한옥양식 분류는 세움터 자료 중 구조 및 지붕재료 등을 통해 분류

○ 1965.12.31 이전 승인된 건축물은 95,077동 중 한옥이 28,904동(30.4%), 한옥건축양식 4,522동(4.8%) 조사됨

○ 시군 분포를 보면 남원시가 6,315동으로 가장 많고, 전주시 6,000동 순

○ 시군의 읍면동별 분포현황 까지 분류하여 기초조사 연구 진행시 참고

[표 3-9] 전라북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시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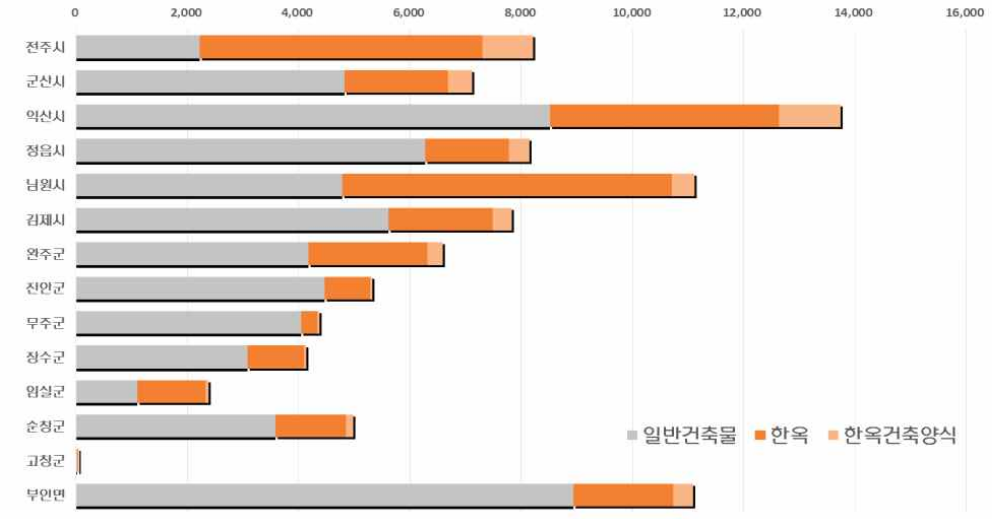
(단위: 동, %)

구분	건축물수	합계		한옥		한옥건축양식	
전라북도	**95,077**	**33,426**	***(100)***	**28,904**	**(30.4)**	**4,522**	**(4.8)**
전주시	8,216	6,000	*(18.0)*	5,089	(61.9)	911	(11.1)
군산시	7,123	2,296	*(6.9)*	1,857	(26.1)	439	(6.2)
익산시	13,743	5,226	*(15.6)*	4,116	(29.9)	1,110	(8.1)
정읍시	8,148	1,868	*(5.6)*	1,499	(18.4)	369	(4.5)
남원시	11,107	6,315	*(18.9)*	5,912	(53.2)	403	(3.6)
김제시	7,826	2,208	*(6.6)*	1,864	(23.8)	344	(4.4)
완주군	6,595	2,419	*(7.2)*	2,132	(32.3)	287	(4.4)
진안군	5,327	857	*(2.6)*	815	(15.3)	42	(0.8)
무주군	4,372	328	*(1.0)*	298	(6.8)	30	(0.7)
장수군	4,134	1,064	*(3.2)*	1,035	(25.0)	29	(0.7)
임실군	2,346	1,278	*(3.8)*	1,222	(51.4)	56	(2.4)
순창군	4,981	1,395	*(4.2)*	1,270	(25.5)	125	(2.5)
고창군	39	19	*(0.1)*	6	(15.4)	13	(33.3)
부안면	11,090	2,153	*(6.4)*	1,789	(16.1)	364	(3.3)

※ 시군별 건축물동수 대비 한옥/한옥건축양식건축물 비율

※ 전라북도 대비 시군 비율





[그림 3-1] 전라북도 시군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현황

※ 출처 :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기초연구, 전북연구원

□ 시대별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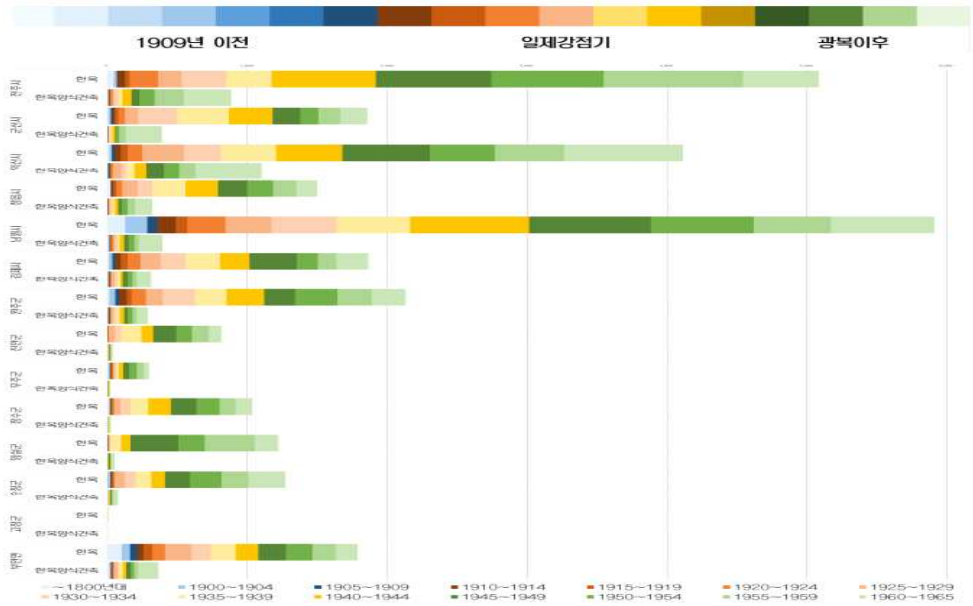
○ 전북연구원에서 조사한 시대별 분포현황을 보면 1935년~65년 비중 큼

○ 한옥건축양식은 1960년대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41.6% 급격히 증가

[표 3-10] 전라북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시대별 분포 현황

(단위: 동, %)

구분	합계		한옥		한옥건축양식	
합계	**33,179**	**(100.0)**	**28,904**	**(100.0)**	**4,522**	**(100.0)**
~1800년대	411	(1.2)	373	(1.3)	38	(0.9)
1900~1904	406	(1.2)	376	(1.3)	30	(0.7)
1905~1909	257	(0.8)	225	(0.8)	32	(0.7)
1910~1914	450	(1.4)	420	(1.5)	30	(0.7)
1915~1919	414	(1.2)	378	(1.3)	36	(0.8)
1920~1924	1,077	(3.2)	1,002	(3.5)	75	(1.8)
1925~1929	1,798	(5.4)	1,625	(5.6)	173	(4.0)
1930~1934	2,377	(7.2)	2,199	(7.6)	178	(4.2)
1935~1939	3,189	(9.6)	2,972	(10.3)	217	(5.1)
1940~1944	4,007	(12.1)	3,695	(12.8)	312	(7.3)
1945~1949	4,758	(14.3)	4,393	(15.2)	365	(8.5)
1950~1954	4,132	(12.5)	3,709	(12.8)	423	(9.9)
1955~1959	4,323	(13.0)	3,736	(12.9)	587	(13.7)
1960~1965	5,580	(16.8)	3,801	(13.2)	1,779	(41.6)



[그림 3-2] 전라북도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시대별 분포 현황

※ 출처 :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기초연구, 전북연구원

□ 가치 있는 건축자산 후보군 도출

○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에서 근대건축자산 237개, 전라북도 비지정문화재 관리대장 469개, 근현대 건축·시설 일제조사 연구12개, 보전대상 문화유산 조사연구 27개로 총 745개 자산을 문헌검토 대상으로 설정

○ 세움터 전산자료와 문헌을 기반으로 리스트를 정리하고 위성사진 등을 통해 건축자산 현황 도출

○ 건축자산 리스트 745개 중 검토를 통해 중복과 멸실 자산 분류하여 572개 후보군 도출

○ 후보군 역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

○ 건축자산의 용도별 분류 하면 인물사건유형 232동, 주거생활유형 126동, 종교유형 55동, 산업생산유형 54도, 교육문화유형 47동 순을 보임



[표 3-11] 기존 수행 문헌조사 유형별 건축자산 현황

(단위: 동, %)

구분	총계	주거생활	정치국방	교통통신	교육문화	산업생산	종교신앙	인물사건	기타
전라북도	572	126	16	8	47	54	55	232	34
전주시	42	2	1	0	11	4	4	7	13
군산시	93	36	2	0	5	8	7	26	9
익산시	66	15	4	1	6	14	6	18	2
정읍시	42	15	1	2	1	7	2	12	2
남원시	66	4	1	2	4	0	3	50	2
김제시	40	7	1	0	2	6	4	17	3
완주군	28	2	0	0	4	6	3	13	0
진안군	12	3	0	0	2	0	1	6	0
무주군	27	2	0	0	2	0	8	15	0
장수군	31	9	2	0	5	0	5	10	0
임실군	29	8	0	1	3	1	1	13	2
순창군	32	9	0	2	0	2	4	15	0
고창군	42	12	2	0	2	3	6	17	0
부안면	22	2	2	0	0	3	1	13	1

○ 전북연구원(2016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72개,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2019년)의 552개로 20여개소가 차이를 보이지만 500여 곳이 후보군으로 도출

○ 군산시 69개로 가장 많고 남원 66개, 익산 63개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전라북도 건축자산 현황

(단위: 동, %)

시·군	건축물수		시·군	건축물수	
전주시	57	10.3	진안군	11	2.0
군산시	69	12.5	무주군	28	5.1
익산시	63	11.4	장수군	30	5.4
정읍시	37	6.7	임실군	27	4.9
남원시	66	11.9	순창군	30	5.4
김제시	39	7.1	고창군	42	7.6
완주군	31	5.6	부안군	22	
총합계			552(100%)		

□ **소결**

○ 사찰, 서원, 관공서, 비각, 가옥 등으로 주요부재를 목재로 사용하는 건축물인 한옥의 관점은 동일함

○ 다만 한옥건축자산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축자산을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신축 및 보수되는 한옥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한옥건축자산의 데이터 분석 필요

○ 기 연구되어 있는 건축자산 기초연구는 조사연구를 위한 리스트 작성으로 보이며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의 건축자산 역시 유형에 따른 분류보다는 종합적 의미가 더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별도의 한옥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2.2. 전북 한옥 건축자산 조사

□ **조사 전제조건**

○ 본 연구는 전북한옥 건축자산 가치를 보유한 **후보군 리스트 작성**

○ 후보군 조사를 통해 **전북 한옥의 건축적 특성 도출**

○ 미래건축자산의 확보를 위한 한옥 신축 및 보수, 지원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유형 및 특성 정리**

□ **후보군 대상 선정기준**

○ 한옥지원 사업에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서 '**거주 목적의 한옥**'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

○ 비지정 문화재보고서, 문화재청, 전라북도 한옥 조사 서적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보존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옥 선정**

○ 멸실 및 변형을 된 한옥은 지역 건축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자료'**를 포함

○ 향후 한옥건축자산 기초조사 연구 진행시 문화재 및 멸실 등의 대상은 제외하여 한옥건축자산 지정

○ 조사 양식에 한옥에 대한 중요도를 일부 표기하여 전북 한옥의 구조 및



의장 등의 특성을 도출

□ 전라북도 한옥 조사대상

○ 조사 대상 한옥은 146채를 우선 선정하여 분석(별첨 참고)

○ 중심건물 : 118채, 부속건물 : 28채

○ 본 자료는 비지정 문화재보고서, 문화재청, 전라북도 관련 서적을 기반으로 선정

○ 선정 이후 2019년 기준 위성사진 및 로드뷰를 통해 현황 검토

○ 기존 자료 중 위성사진 등으로 멸실되었지만 전라북도 및 시군별 한옥 건축적 특성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료에 수록하여 분석

[표 3-13] 전라북도 한옥 조사대상

연번	소재지	주소	건립년도	채명	평면형태	규모(정면)	규모(측면)	마루	가구구조	지붕형태	지붕재료	처마	기둥
1	군산시	고봉리 227-1	1925년	안채	ㅡ자형	5	3	툇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강판	홑처마	사각기둥
2	군산시	금성리 153-1	1925년	안채	ㅡ자형	8	3	대청마루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3	군산시	남내리 220-1	19세기 말	안채	ㅡ자형	5	2	대청마루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4	군산시	남내리 220-1	19세기 말	행랑채	ㅡ자형	6	1	없음	3량	우진각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5	군산시	남내리 220-1	19세기 말	부속채	ㅡ자형	7	1	없음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6	군산시	마룡리 698-1	미상	안채	ㅡ자형	7	3	대청마루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7	군산시	마룡리 484	20세기 초	안채	ㄱ자형	4.5	4.5	대청마루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강판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8	군산시	미원리 350-1	1920년대	안채	ㅡ자형	5.5	3	대청마루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9	군산시	산곡리 611	1880년대	안채	ㅡ자형	7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0	군산시	서포리 338-8	1930년대	안채	ㅡ자형	6.5	2.5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1	군산시	서포리 338-8	1930년대	사랑채	ㅡ자형	6.5	2.5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2	군산시	서포리 338-8	1930년대	행랑채	ㄱ자형	4	4	-	3량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3	군산시	운회리 434-1	19세기 말	안채	ㅡ자형	5	3	툇마루 쪽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4	군산시	오곡리 74	1926년	안채	ㅡ자형	6	3	대청마루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5	군산시	오곡리 200	1926년	사랑채	ㅡ자형	6.5	3	대청마루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6	군산시	읍내리 동상마을	19세기 말	안채	ㅡ자형	5	3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7	군산시	경성부락 잔삿골	1917년	안채	ㅡ자형	6.5	3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8	군산시	경성부락 잔삿골	1917년	대문채	ㅡ자형	5	1	-	3량	팔작지붕 맞배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
19	김제시	백학동553	1920년대이후	안채	ㅡ자형	6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20	김제시	서도리 96-1	조선 후기	안채	ㄱ자형	6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겹처마	사각기둥
21	김제시	서도리 96-1	조선 후기	사랑채	ㅡ자형	4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22	김제시	서도리 96-1	조선 후기	사당	ㅡ자형	3	2	대청마루	3량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23	김제시	서도리 96-1	조선 후기	문간채	ㅡ자형	5	1	없음	3량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24	김제시	서도리 96-1	조선 후기	중문간채	ㅡ자형	6	2	대청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25	김제시	용동16	1915년	안채	ㅡ자형	6	3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26	김제시	용동16	1922년	사랑채	ㅡ자형	5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27	김제시	용동16	1946년	문간채	ㄴ자형	4	2	없음	3량	우진각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원기둥
28	김제시	용동16	1915년	헛간채	ㅡ자형	4	2	없음	3량	우진각지붕	슬레이트	홑처마	원기둥
29	김제시	장화동 210-1	1859년	안채	ㅡ자형	7	3	대청마루 툇마루	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30	김제시	장화동 210-1	1860년	사랑채	ㅡ자형	6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31	김제시	장화동 210-1	1861년	고방채	ㅡ자형	4	2	없음	3량	우진각지붕	슬레이트	홑처마	-
32	김제시	장화동 210-1	1862년	문간채	ㅡ자형	5	1	없음	3량	우진각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
33	남원시	관풍리 794-6	1793년	서원	ㅡ자형	4	1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원기둥
34	남원시	상동리 661	1511년	안채	ㄷ자형	5	3	대청마루 툇마루	5량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35	남원시	호곡리 796-3	18세기 말	안채	ㄷ자형	5	3	대청마루 툇마루	5량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시각기둥



								쪽마루					
36	남원시	호곡리 796-3	18세기 말	사랑채	ㅡ자형	5	3	대청마루 툇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	원기둥 사각기둥
37	남원시	호곡리 270-1	1841년	안채	ㄷ자형	5	-	대청마루 툇마루	5량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38	남원시	호곡리 270-1	18세기 말	사랑채	ㅡ자형	4	1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4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39	익산시	광암리 사곡마을 554-1	1878년	안채	ㅡ자형	6	3	대청마루 툇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40	익산시	광암리 사곡마을 554-1	1879년	사랑채	ㅡ자형	5	2	대청마루 툇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41	익산시	광암리 사곡마을 554-1	1880년	별채	ㅡ자형	5	2	대청마루 툇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42	익산시	동고도리 560-1	1920~1930년	안채	ㄱ자형	4	3	대청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43	익산시	동고도리 560-1	1920~1931년	사랑채	ㅡ자형	4	2	대청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	-
44	익산시	동고도리 560-1	1920~1932년	문간채	ㅡ자형	4	2	-	1고주5량	우진각지붕	기와	-	-
45	익산시	동고도리 교동마을 367-1	1910~1920년	안채	ㄱ자형	8	3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46	익산시	신동리 756	1931년	안채	ㅡ자형	6	3	대청마루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47	익산시	신동리 756	1931년	사랑채	ㅡ자형	5	3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칼라강판	홑처마	사각기둥
48	익산시	신동리 756	1931년	헛간	ㅡ자형	4	1	-	3량	우진각지붕	시멘트기와	-	-
49	익산시	함열리 457	1922년	안채	ㄱ자형	7.5	5.5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50	익산시	함열리 457	1922년	사랑채	ㄱ자형	6.5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누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51	익산시	함열리 441-2	1917년	안채	ㄱ자형	7	5	대청마루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52	익산시	함열리 441-2	1917년	사랑채	ㅡ자형	7	3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53	익산시	함열리 473	1918년	사랑채	ㄹ자형	7	5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누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겹처마	사각기둥
54	전주시	교동 79-47	1979년	안채	ㄱ자형	4	2	툇마루	5량	팔작지붕	강판	겹처마	사각기둥
55	전주시	교동 57-4	1940년	안채	ㄱ자형	4	3.5	툇마루	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56	전주시	교동 90	2008년	안채	ㅡ자형	4.5	3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전통기와	겹처마	원기둥
57	전주시	은행로 33-7	1976년	안채	ㅡ자형	3	2	쪽마루	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58	전주시	풍남동3가 72-8	1922년	안채	ㄱ자형	4	2	툇마루	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겹처마	사각기둥
59	전주시	교동 118-3	2011년	안채	ㅡ자형	5	3	쪽마루	5량	팔작지붕	전통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60	전주시	교동 169-2	1950년	안채	ㅡ자형	4	3	쪽마루	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61	전주시	교동 180-3	1937년	안채	ㄱ자형	4	2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62	전주시	교동 196	1932년	안채	ㅡ자형	4	3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전통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63	전주시	풍남동3가 43	1922년	안채	ㄹ자형	6	2	툇마루	5량	팔작지붕	전통기와	겹처마	사각기둥
64	전주시	교동 105-12	1933년	안채	ㄱ자형	8	6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전통기와	겹처마	원기둥
65	전주시	풍남동3가 23-11	2006년	안채	ㅡ자형	3	2	툇마루	5량	맞배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원기둥
66	전주시	교동 17-3	1940년	안채	ㄱ자형	5.5	2	툇마루	5량	팔작지붕	전통기와	홑처마	원기둥
67	전주시	교동 16-17	2010년	안채	ㅡ자형	-	-	툇마루	5량	팔작지붕	전통기와	홑처마	원기둥
68	전주시	교동 15-22	2006년	안채	ㅡ자형	3	3	쪽마루	5량	팔작지붕	전통기와	겹처마	사각기둥
69	전주시	교동 123	1938년	안채	ㅡ자형	5	2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70	전주시	교동 132-11	1926년	안채	ㄴ자형	4	2	쪽마루	5량	팔작지붕	전통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71	전주시	교동 45-9	1970년	안채	ㄱ자형	3	2	쪽마루	5량	팔작지붕	전통기와	겹처마	사각기둥
72	정읍시	관청리 570-1	1940년	본채	ㅡ자형	7	4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일식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73	정읍시	관청리 570-1	1940년	부속채	ㅡ자형	10	2	툇마루	5량	우진각지붕	일식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74	정읍시	도계리 442	1918년	안채	ㅡ자형	6	3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5량	우진각지붕	시멘트기와 함석	홑처마	사각기둥
75	정읍시	도계리 442	1919년	문간채	ㅡ자형	5	3	툇마루 쪽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함석	홑처마	사각기둥
76	정읍시	도계리 442	1920년	중문간채	ㅡ자형	3	2	없음	3량	우진각지붕	슬레이트	홑처마	사각기둥
77	정읍시	보화리 와석마을 595	1930년전후	안채	ㅡ자형	6	3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78	정읍시	보화리 와석마을 595	1930년전후	사랑채	ㅡ자형	6	2	대청마루	1고주5량	우진각지붕	일식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79	정읍시	보화리 와석마을 595	1930년전후	문간채	ㅡ자형	7	2	대청마루	1고주5량	우진각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80	정읍시	오공리 814	미상	안채	ㄷ자형	5	3.5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81	정읍시	오공리 814	미상	사랑채	ㅡ자형	5	2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사각기둥
82	정읍시	오공리 814	미상	안사랑 채	ㅡ자형	5	3	대청마루 툇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사각기둥
83	정읍시	장명동 74	1910년전후	안채	ㅡ자형	7	3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5량	우진각지붕	슬레이트	홑처마	민흘림기 둥
84	정읍시	장명동 74	1910년전후	안행랑 채	ㅡ자형	5	2	툇마루	1고주5량	우진각지붕	슬레이트	홑처마	민흘림기 둥
85	정읍시	장명동 186	1919년	사랑채	ㄴ자형	11	3	툇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겹처마	사각기둥
86	정읍시	장명동 186	1919년	안채	ㅡ자형	7	2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87	정읍시	주천리 주동마을	1925년	안채	ㅡ자형	6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2고주6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88	정읍시	주천리 주동마을	1925년	사랑채	ㅡ자형	5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칼라강판	홑처마	사각기둥
89	정읍시	주천리 주동마을	1925년	문간채	ㅡ자형	5	2	툇마루	1고주5량	우진각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90	정읍시	태성리 옥하마을 498	20세기 초	안채	ㅡ자형	7	3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일식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91	정읍시	하흑마을	1920년전후	안채	ㅡ자형	6	3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함석	홑처마	원기둥
92	정읍시	하흑마을	1920년전후	정려각	ㅡ자형	1	1	없음	3량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93	고창군	무장리 281-2	20세기 초	안채	ㅡ자형	4	3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94	고창군	무장리 380-2	20세기 초	안채	ㅡ자형	7	3	툇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95	고창군	무장리 380-2	20세기 초	대문채	ㅡ자형	3	1	없음	3량	팔작지붕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96	고창군	암치리 317	19세기 말	안채	ㅡ자형	7	3	대청마루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
97	고창군	암치리 317	19세기 말	사당	ㅡ자형	3	3	-	1고주5량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98	고창군	암치리 317	19세기 말	대문채	ㅡ자형	5	1	-	3량	팔작지붕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99	고창군	율촌리 174	1934년	안채	ㅡ자형	8	3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7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100	고창군	율촌리 174	1934년	사당	ㅡ자형	3	2	대청마루	5량	맞배지붕	기와	겹처마	원기둥
101	고창군	율촌리 174	1934년	대문채	ㅡ자형	5	1	툇마루	3량	팔작지붕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102	고창군	하고리 453	19세기 말	안채	ㅡ자형	8	3	대청마루 툇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103	고창군	하고리 453	19세기 말	창고	ㅡ자형	4	2	없음	5량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04	고창군	하고리 453	19세기 말	대문채	—자형	5	1	대청마루	3량	팔작지붕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05	고창군	하고리 452-3	19세기 말	사랑채	—자형	4.5	3	대청마루 누마루	1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06	무주군	금평리 409-3	1932년	서원	—자형	4.5	2.5	대청마루 툇마루	5량	팔작지붕	슬레이트	홑처마	사각기둥
107	무주군	협내리 원평(원촌)마을	1849년	서원	—자형	5	1.5	대청마루 툇마루	5량	팔작지붕	한식기와	홑처마	원기둥
108	부안군	월천리 86	1917년	안채	—자형	6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사각기둥
109	부안군	월천리 86	1927년	사랑채	—자형	7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2고주5량	팔작지붕	기와	겹처마	원기둥 사각기둥
110	부안군	월천리 86	1917년	대문채	ㄱ자형	9	1	없음	3량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11	부안군	줄포리 445	1895년	안채	—자형	6	2	대청마루 툇마루	2고주5량	목조초가	볏짚	홑처마	사각기둥
112	부안군	줄포리 445	1895년	사랑채	—자형	4	2	툇마루	-	목조초가	볏짚	홑처마	사각기둥
113	부안군	줄포리 445	1903년대	안사랑 채	—자형	3	2	툇마루	-	목조초가	볏짚	홑처마	사각기둥
114	순창군	가남리 가남마을	1900년대	안채	—자형	4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3량	팔작지붕	강판 기와	홑처마	원기둥
115	순창군	가남리 가남마을	1900년대	사랑채	—자형	4	1	툇마루	3량	우진각지붕	슬레이트	홑처마	원기둥 사각기둥
116	순창군	가남리 가남마을	1900년대	부속사	—자형	3	1	없음	3량	우진각지붕	골슬레이트	홑처마	사각기둥
117	순창군	가남리 가남마을	1901년대	안채	—자형	4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사각기둥
118	순창군	가남리 가남마을	1902년대	부속사	—자형	5	2	쪽마루	1고주2량	우진각지붕	슬레이트기와	홑처마	원기둥 사각기둥
119	순창군	가남리 가남마을	1903년대	안채	—자형	4	2	툇마루	3량	우진각지붕	함석	홑처마	사각기둥
120	순창군	가남리 가남마을	1904년대	안채	—자형	5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사각기둥
121	순창군	가남리 가남마을	1905년대	사랑채	—자형	4	3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1고주3량	우진각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원기둥 사각기둥
122	순창군	가남리 가남마을	1906년대	부속사	—자형	4	3	대청마루 툇마루	3량	우진각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원기둥 사각기둥
123	순창군	구곡리 419	1900년대	안채	—자형	4	3	-	3량	팔작지붕	슬레이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24	순창군	구곡리 419	1900년대	부속채	ㄱ자형	5	2	-	3량	우진각지붕	골슬레이트	홑처마	원기둥
125	임실군	둔덕리 456-1	1909년	안채	ㄷ자형	5	3	대청마루	3량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26	임실군	둔덕리 456-1	1864년	사랑채	—자형	3	1	대청마루 툇마루	3량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27	임실군	후천리 465	1650년	안채	—자형	4	2	대정마루 툇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128	임실군	후천리 465	1650년	사랑채	ㄱ자형	3	2	툇마루	-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129	완주군	갈산리 원갈산 535	1950년대	안채	—자형	4	2	툇마루 쪽마루	3량	우진각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30	완주군	갈산리 옥정 467	1900년대	안채	—자형	3	2	툇마루	3량	우진각지붕	골슬레이트	홑처마	원기둥 사각기둥
131	완주군	갈산리 원갈산 544	1940년대	안채	—자형	5	2	툇마루	3량	우진각지붕	시멘트 기와	홑처마	원기둥
132	완주군	갈산리 원갈산 535	1940년대	안채	ㄱ자형	3	2	툇마루	3량	우진각지붕	골슬레이트	홑처마	원기둥 사각기둥
133	완주군	금평리 신풍	1940년대	안채	—자형	3	2	쪽마루	3량	우진각지붕	슬레이트	홑처마	원기둥
134	장수군	노단리 1095	1856년	안채	—자형	4	3	대청마루 툇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135	장수군	노단리 1095	1856년	사랑채	—자형	4	2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5량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136	장수군	사계리 586	1938년	안채	—자형	5	3	대청마루 툇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137	장수군	사계리 586	1938년	사랑채	ㄱ자형	4	3	대청마루 툇마루 누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사모기둥
138	장수군	사계리 586	1938년	행랑채	—자형	4	1	없음	3량	맞배지붕	기와	홑처마	방형기둥
139	장수군	사계리 580-1	1854년	안채	—자형	4	2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사각기둥
140	장수군	사계리 580-1	1854년	사랑채	—자형	5	1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141	장수군	오산리 177-1	1866년	안채	ㄱ자형	5	1.5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142	장수군	오산리 177-1	1733년	사랑채	—자형	4	1	대청마루 툇마루 쪽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143	진안군	강정리 248-1	1924년	안채	ㄱ자형	5	3	툇마루	5량	팔작지붕	강판	홑처마	사모기둥
144	진안군	능금리 806	1772년 추정	사당	—자형	4	2	대청마루 툇마루	5량	팔작지붕	기와	홑처마	원기둥
145	진안군	백화리 중배실(중리) 마을	18세기 말	서당	—자형	4	1.5	대청마루 툇마루	3량	팔작지붕	슬레이트	홑처마	사각기둥
146	진안군	월포리 금지마을 1005	19세기 말	재실	—자형	3	1.5	툇마루	5량	팔작지붕	시멘트기와	홑처마	원기둥

2.3. 특성 분석 및 유형 분류

가. 전라북도 시군별 분포

□ 전라북도 시군별 분포

○ 조사한옥의 현황을 보면 문화재급 한옥은 타지자체와 동일하게 예산 지원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

○ 비지정 한옥의 경우 타지자체와 유사하게 방치에 따른 훼손이 심각하거나 멸실 및 개발에 따른 철거가 진행

○ 특히 혁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한옥철거, 산간 및 농촌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의 시설 노후화가 심각

○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후보군 146동 중 정읍시 21동(14.5%) 가장 많고, 무주군 2동(1.4%) 가장 적게 나타남

○ 이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한옥 보존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후보군 도출에 한계가 있음

[표 3-14]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후보군 지역별 분포

(단위 : 동, %)

구분	건축물수				구분	건축물수			
시군	중심	부속	계	비율	시군	중심	부속	계	비율
전주시	18	-	18	12.4	진안군	4	-	4	3.5
군산시	14	4	18	13.1	무주군	2	-	2	1.4
익산시	13	2	15	9.7	장수군	8	1	9	6.1
정읍시	15	6	21	14.5	임실군	4	-	4	2.8
남원시	6	-	6	4.1	순창군	7	4	11	6.9
김제시	9	5	14	9.6	고창군	8	5	13	8.3
완주군	5	-	5	3.5	부안군	5	1	6	4.1
총합계					146(100%)				



나. 전북 한옥의 건축적 특성 및 유형 분류

□ 분석 대상 수

○ 중심건물 : 118채, 부속건물 : 28채

□ 지리적 특성

○ 전북한옥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공간 구성에서 동서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임

○ 평야지대가 있는 서부는 홑집이고 산간지역의 동부는 홑집 이외 반겹집이나 겹집형 평면구성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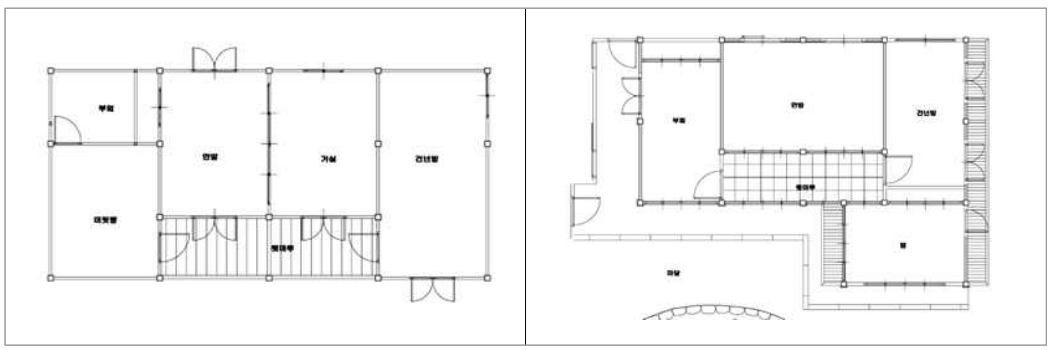
□ 평면형태

○ 본채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평면형태는 一자형이 114채(7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ㄱ자형이 분포

[표 3-15] 전라북도 평면형태

구분	一 자형	ㄱ 자형	기타	계	비고
주동	89	21	8	118	
부속동	24	4	-	28	
계	114	25	8	146	
비율(%)	78.0	17.0	5.0	100	

※ 기타 : ㄷ, ㄹ, ㅗ자형



一자형 평면도　　ㄱ자형 평면도

[그림 3-3] 전라북도 한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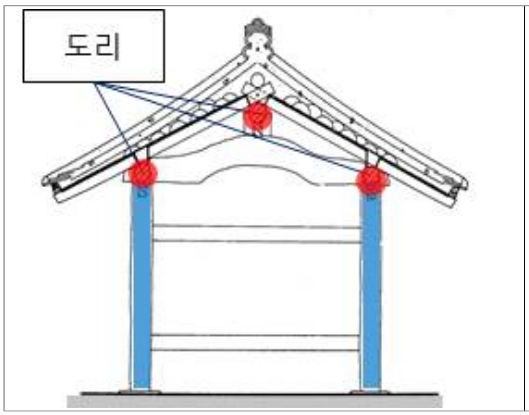
□ 가구구조

○ 전북 한옥의 본채 가구는 5량가 구조가 52채(36.7%) 가장 많고 1고주5량, 2고주5량으로 적정한 범위의 규모로 나타남

○ 3량 가구구조가 32채(22.5%)로 나타나지만 부속동이나 주동의 날개 부분의 구조 영향으로 보임

[표 3-16] 전라북도 가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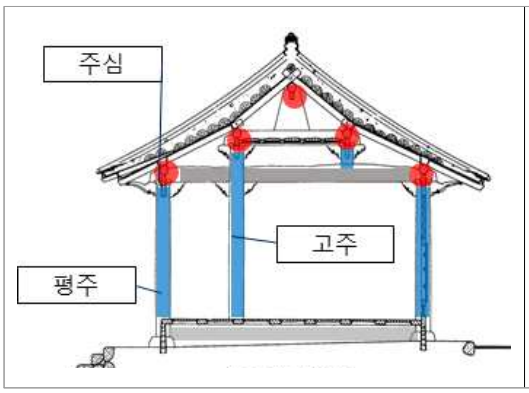
구분	3량	5량	1고주5량	2고주5량	2고주7량	기타	계
주동	15	48	23	25	1	2	114
부속동	17	4	5	0	0	2	28
계	32	52	28	25	1	4	142
비율(%)	22.5	36.7	19.7	17.6	0.7	2.8	100



3량가



3량가 내부사진



1고주 5량가



5량가 내부사진

[그림 3-4] 전라북도 한옥 가구도



□ 기둥형태

○ 전북한옥은 방형기둥이 80채(58.0%)로 가장 많고

○ 원기둥이 45채(32.6%) 나타남

○ 방형은 벽을 형성하는 방, 원기둥은 대청을 중심으로 사용

[표 3-17] 전라북도 기둥형태

구분	방형기둥(사모)	원기둥	혼합	계
주동	66	37	11	114
부속동	14	8	2	24
계	80	45	13	138
비율(%)	58.0	32.6	9.4	100



방형기둥 원형기둥

[그림 3-5] 전라북도 한옥 기둥형태

□ 정면

○ 정면 5칸 규모이고 측면은 3칸 규모의 한옥이 주를 이룸

○ 한옥에서 온칸은 8자(약2.4m)를 기본으로 하고 반칸은 4자(1.2m)의 길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전북한옥의 정면은 5칸이 41채(28.3%)로 가장 많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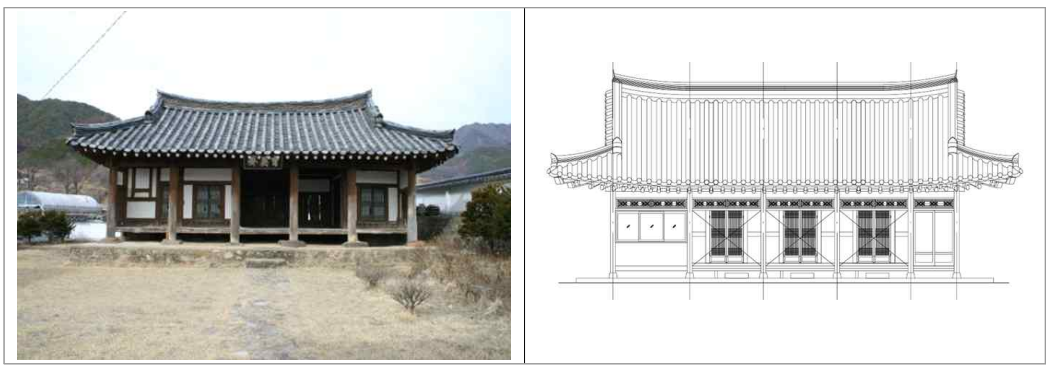
○ 4칸 38채(26.2%), 7칸이 20채(13.7%)순으로 나타남

○ 정면 6칸 이상의 한옥이 48채(33%)로 전라북도 부농가옥의 규모를 이해할 수 있음

○ 주동인 본채는 집의 규모가 5칸인 경우 정면이 모서리 기둥 간격으로 12m 정도의 길이를 보임(한칸=8자=2.42m)

[표 3-18] 전라북도 한옥 정면규모

구분	3칸이하	4칸	5칸(4.5)	6칸(5.5)	7칸(6.5)	8칸이상	계
주동	15	30	30	17	18	7	117
부속동	3	8	11	2	2	2	28
계	18	38	41	19	20	9	145
비율(%)	12.5	26.2	28.3	13.1	13.7	6.2	100



정면 사진(5칸) 정면도(4.5칸)

[그림 3-6] 전라북도 한옥 정면

□ 측면

○ 전북한옥의 측면은 3칸(3.5칸)이 64채(44.4%)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2.5칸으로 나타남

○ 0.5칸의 개념은 전면 또는 후면에 퇴칸을 형성하고 전면은 툇마루를 후면은 중앙의 온칸과 함께 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

○ 온칸이 8자를 기준으로 약 2.4m이고 반칸이 4자 기준으로 약 1.2m로 툇마루는 1.2~1.5m의 통로가 일반적이고 온칸인 중앙의 2.4m와 반칸인 후면 퇴 1.2m를 합쳐 방의 폭을 3.6m 규모를 구성



[표 3-19] 전라북도 한옥 측면규모

구분	1칸	1.5칸	2칸	2.5칸	3칸	3.5칸	4칸	4.5칸	5칸 이상	계
주동	7	4	34	3	60	2	1	1	4	116
부속동	13	-	12	-	2	-	1	-	-	28
계	20	4	46	3	62	2	2	1	4	144
비율(%)	13.9	2.8	32.0	2.1	43.1	1.3	1.4	0.7	2.7	100



측면 3칸(전후툇집)



측면 2칸

[그림 3-7] 전라북도 한옥 측면

□ 처마유형

○ 전북한옥의 처마는 홑처마 구성이 130채(92.2%)로 가장 많음

○ 홑처마는 연목만 설치한 지붕가구로 농가한옥에 주로 사용되며 겹처마는 도시한옥에서 부연 부재를 짧게 달고 차양을 설치

[표 3-20] 전라북도 한옥 처마유형

구분	홑처마	겹처마	계	비고
주동	104	11	115	
부속동	26	0	26	
계	130	11	141	
비율(%)	92.2	7.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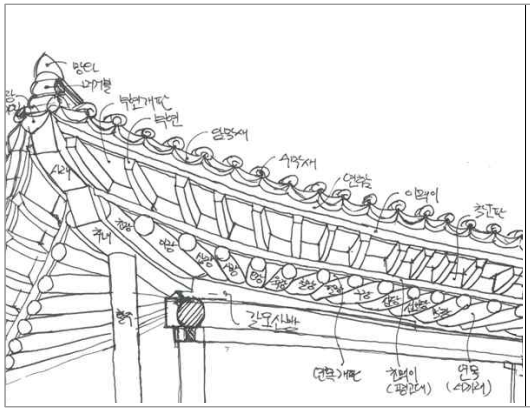
홑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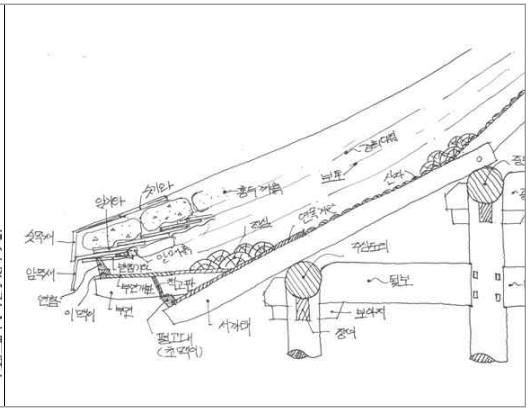
겹처마

[그림 3-8] 전라북도 한옥 처마

○ 한옥은 평연만 사용하는 맞배집과 다르게 전북한옥은 팔작지붕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모서리부분에 선자연 구성을 이루는 구조도가 필요



선자연 겹처마



연목 세부단면도

[그림 3-9] 전라북도 한옥 처마 가구도

○ 선자연 처마 가구도

- 모서리 지붕가구 중 선자 구성을 보면 선자연, 마족연, 평연으로 구분
- 선자연은 기법이 어려워 고택 등에 사용되고 일반적으로는 마족연을 사용하며 평연은 국내보다는 일본 등에서 다수 사용
- 전라북도 한옥은 팔작지붕으로 선자연 처마 구성이 일반적으로 나타남
- 다만 정선자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기법이며 비용이 많이 소요됨
- 결과적으로 선자 구성 기법 중 하나인 마족연도 함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선자연



마족연

[그림 3-10] 전라북도 한옥 처마 가구도



□ **지붕형태**

○ 전북한옥의 지붕은 본채의 경우 팔작지붕이 96채(66.2%)로 가장 많으며 문간채 등 부속동은 우진각을 주를 이룸

[표 3-21] 전라북도 한옥 지붕형태

구분	맞배	우진각	팔작	우진각·맞배	팔작·맞배	초가	계
주동	10	12	93	-	-	3	118
부속동	3	15	3	2	5	-	28
계	13	27	96	2	5	3	146
비율(%)	8.9	18.5	65.8	1.4	3.4	2.0	100



팔작지붕



맞배지붕

[그림 3-11] 전라북도 한옥 지붕형태

□ **지붕재료**

- 기와(한식기와, 일식기와), 시멘트기와, 볏집, 슬레이트 등
- 시멘트 기와, 합성수지기와, 강판 등으로 보수과정에서 변형

다. 전라북도 한옥의 건축적 특성 및 유형 종합

□ **평면 형태 : ㅡ 자형이 78.0 %**

□ **가구구조 : 5량가가 74.0%, 3량가 22.5% 순으로 나타남**

□ **3량가 : 부속채 및 날개칸에서 주로 구성**

□ **기둥형태 : 방형이 58.0%로 많고 원형 기둥은 다수가 벽체 구성이 없는 대청마루의 기둥으로 사용**

□ **칸 구성 : 정면 5칸(4.5칸 포함)이 28.3%, 4칸이 26.2%로 나타남**

□ **측면 : 3칸(2.5칸포함)이 45.2%로 가장 많음. (반칸 규모인 퇴칸 구성에 따름)**

□ **처마 : 홑처마가 92.2%**

□ **지붕 형태 : 팔작 지붕이 65.8%**

□ **지붕 재료 : 한식기와 또는 시멘트기와가 주를 이룸**

2.3 소결

○ 문화재 한옥은 문화유산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어 보전계승

○ 반면 비지정한옥은 개발 등으로 훼손 및 멸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비지정한옥에 대한 건축자산의 가치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기준안 마련 필요

○ 한옥 건축자산 중 종교, 관아, 교육 등의 건축물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부 지원 대상으로 철거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함

○ 그러나 한옥주택은 개인 소유 중심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소유자 경제적 역량에 따라 훼손 및 멸실되고 있는 실정

○ 한옥건축자산이 향후 한옥건축 신축 및 보수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어 동일 규모를 중심의 건축자산 분석 필요

○ 한옥건축자산은 용도에 따라 종교, 관아, 교육, 주택 등으로 구분

○ 한옥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한 관점에서 건축자산의 기초조사 연구 필요

○ 지역의 한옥건축자산의 적정한 수량 확보가 필요

○ 이는 문화재와 같이 점적인 방식의 관리는 예산 및 노력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선적이거나 면적인 관리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따라서 한옥 건축자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교육시설 중 주택의 규모에서 거주 특성을 보이는 강당의 건물도 기초조사 필요

Ⅳ 전북 한옥 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안)

1 지자체 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 분석
2 전북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안)

Ⅳ.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의 가치판단 기준(안)

1. 지자체 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 분석

1.1. 건축자산 개념 정리

□ **건축자산과 문화재 차이**

○ 건축자산은 국토교통부 주관, 문화유산은 문광부의 문화재청에서 주관

○ 건축자산과 문화재인 건축유산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확립 필요

○ 문화재는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으로 원형 및 원상을 유지 보전과 계승 중심

○ 건축자산은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자산을 실제적 운영하여 경제적 창출

○ 정부 및 공공이 투자하여 용도 및 현상변경 등 활용적 가치 모색 중심

○ 건축자원 중 한옥에 대한 국토부와 문광부의 접근성에 차이를 보임

- 국토부는 한옥을 거주를 기반으로 신축과 보수를 하는 관점에서 한옥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문광부는 한옥을 문화의 개념으로 관광과 활용의 관점
- 문화재청은 문화재 개념에서 유지를 기반으로 활용을 하는 관점

1.2. 지자체 건축가치 판단 기준 종합

○ 타지자체의 경우 한옥에 대한 별도의 가치판단 기준보다는 건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마련

○ 건축자산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설정한 현황

- 국가 기준을 2015년 설정 이후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서 가치기준을 마련
- 이는 건축자산 기초조사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치판단 기준을 마련

○ 가치판단 기준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사회문화



적으로 4개의 구분 항목을 따르고 제주와 경기도는 추가 제시

○ 제주는 연대 및 희귀성, 온전성, 경기도는 원형유지, 희소성에 추가적인 구분 항목을 설정

○ 세부항목은 국가는 12개 항목으로 제시했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내용을 제시

[표 4-1] 국가 및 지자체 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사례 종합

구분	가치판단 기준(안)	
역사적 가치	역사적 연관성	· 역사적 중요 사건, 인물
	자산희소성	· 동시대 건축물 중 용도나 양식 희소성
경관적 가치	경관적 상징성	· 경관자원 우수, 특정범위 건축물 및 상징성
	경관 차별성	· 조성당시 오래된 마을 또는 도시의 모습을 간직
예술적 가치	건축적 대표성	·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에 있어 당시 건축적 구조적 특징 대표
	원형보존성	· 건립당시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는자산
		· 보수 등을 통해 현재도 활용되어 생활·문화적 가치를 유지한 자산
	미학적 우수성	· 동시대의 건물 중 공간 구성 및 외형 등이 독창성을 가진 자산
	인증된 예술적 기술적 우수성	· 저명한 설계자, 기술자 등 공인된 시상제도 등
사회 문화적 가치	감정적 가치 공유성	· 지역 주민에게 정신적, 정치정, 국가적, 문화적 감성의 자산
	사회적 대표성	· 지역의 정체성(문화적 다양성, 개방성)과 상징성을 가진 자산
	지역적 특수성	· 당대지역사회 문화적 특징 보여주는 자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제적 활용성	· 건축물의 보전 및 활용 통한 지역 경제적 효과 증대

○ 건축자산 중 한옥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여 가치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건축자산에 대한 예비 가치판단과 본 가치판단의 단계적로 제시 필요

○ 세부 항목의 중복성 및 평가 대상 건축물의 형평성을 고려 필요

○ 적용할 세부 항목 기준이 많으며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어 대분류 단계에서 유형을 구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가치 판단 기준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종적인 조정 필요

○ 실제 현장 조사와 활용성 등을 병행하여 기준 설정 필요

1.3. 한옥 등 건축자산의 방향성

○ 한옥은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자원으로 부처별 다양하게 활용 가능

○ 부처별 역할에 대한 명확함 필요

○ 국토부는 건축적 관점에서 전통한옥을 기반으로 현대적 기술과 재료 등이 융합하여 한옥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심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문광부와 문화를 육성하고 확산하는 관점에서 문화재청은 전통의 기술을 보전계승하고 원상을 유지를 위한 활용의 접근이 필요해 보임

○ 건축자산 역시 문화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건축적 가치를 유지하며 현재에 적합하게 활용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

○ 또한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맥을 이어가며 마을, 도시, 국가의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연결하여 자산을 유산으로 남기는 과정이 필요

○ 지역 또는 국가의 구성원이 건축자산을 통해 역사와 시대를 바르게 보며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화강국의 국가브랜드의 경쟁력 확산

2. 전북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안)

2.1. 전북 건축자산 가치판단 분류 방식 제안

□ 가치판단 기준 분류 방식 제안

○ 한옥 등 건축자산은 교량, 건조물, 토목, 근대건축물, 한옥 등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음

○ 한옥은 건축자산에 분류 항목에서 철과 콘크리트 등 현대적 재료가 아닌 목재, 흙, 석재 등의 재료를 중심으로 사용

○ 국가의 기초조사 연구 가이드라인과 같은 4개구분, 12개 세부내용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해석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북의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안)을 대중소로 분류 방식 제안

○ 국토부 건축자산 기초조사연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분류

○ 대분류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 구분

- 교량, 건조물, 근대건축물, 한옥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세부내용 제시

○ 중분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구분

- 건축물은 한옥과 비한옥, 공간환경은 주거지(마을, 도시) 분류



○ 소분류는 국가 분류인 4개 항목

- 역사적가치, 경관적가치, 예술적가치, 사회문화적가치 구분하여 제시
- 건축자산 지정 이후 유지관리활용적 측면에서 가치판단

○ 세부 내용 및 설명은 국가 항목과 더불어 대분류 유형에 따른 제시

- 지역적 특성과 건축물 유형에 따라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적용

2.2. 전북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안)

가. 가치판단 기준마련 전제

□ 전라북도 건축자산 가치 판단기준(안) 제시 전제

○ 한옥 건축 자산 가치 판단 기준은 기존 한옥에 대한 조사자료 및 건축문화재 등급 기준을 기반으로 전라북도 한옥에 맞춰 기준(안)

○ 전라북도 한옥 건축 자산 가치 판단 기준(안)은 소분류로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지역사회문화적, 유지관리활용 가치로 제시

○ 소분류 항목에 따른 속성 항목 제시 필요

○ 역사적 가치에 건립연대 적용, 예술적 가치에 의장, 기법, 구조로 분류하여 판단기준 제시

○ 한옥건축자산 지정 후 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한옥건축자산 가치 판단기준의 세부 내용 및 설명은 등급을 적용하여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판단 방안 제시

○ 1등급 ~ 5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를 적용

[표 4-2]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가치 판단기준(안)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수	7	6	4	2	1

○ 작성예시

- 전북-전주시-노송동-건축물-한옥-1번
- 전북-전주시-교동-공간환경-주거지(도시)-1번

□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적용 대상 선정 전제

○ 한옥건축자산은 국토부 관점에서 거주 및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한 건물을 대상으로 선정

○ 국가 문화재 지정 및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옥건축물은 제외

○ 한옥건축자산은 기 조성된 한옥의 현재적 관점을 중심으로 미래 신축 및 보수를 통해 발생되는 미래적 자산을 확보 목표 설정 필요

○ 한옥 건축물 역시 관아, 사찰, 교육, 주거 등 다양하며 용도에 따라 건축적 규모나 기법에 차이가 있어 분류하여 건축적 특성과 유형 도출

○ 최근 신축하는 한옥의 유형은 주택, 상가, 어린이 도서관 등으로 주거 및 공공건축물의 건축적 특성에 따른 대상 선정

나. 가치판단 기준(안)

□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안)

○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지역사회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

○ 별도로 유지관리 및 활용에 대한 가치판단

○ 전북의 가치판단 기준은 국가 세부내용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고 등급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1) 역사적 가치

□ 역사적 가치

[표 4-3]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역사적 가치 등급별 기준(안)

등급	내용
조사대상 한옥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인물과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건축자산의 희소성에 따라 가치 판단	
1,2 등급	조사 건물과 관련하여 인물이나 사건이 국가나 전라북도의 역사적 기록 가치가 있는 경우 (단, 문화재는 제외)
3 등급	조사 건물과 관련하여 인물이나 사건이 지역의 역사적 기록 가치가 있는 경우
4,5 등급	조사 건물과 관련하여 인문이나 사건이 마을의 역사적 기록 가치가 있는 경우



□ 건립연대

[표 4-4]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건립연대 등급별 기준(안)

등급	내용
1 등급	~1900년대 이전 한옥
2 등급	1900년대 ~ 1980년대 이전
3 등급	1980년대 ~ 2010년 이전
4,5 등급	2010년대 ~ 2020년 이전

(2) 경관적 가치

[표 4-5]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경관적 가치 등급별 기준(안)

경관적 상징성	경관자원 우수, 특정범위 건축물 및 상징성
경관 차별	조성당시 오래된 마을 또는 도시의 모습을 간직
지역 연계성	자산이 선 또는 면으로 밀집되어 있어 경관이 우수, 활용가능

등급	내용
1,2 등급	조사 건물이 당시의 경관 우수성이 잘 남아 있는 경우
3 등급	조사 건물이 당시의 경관 우수성이 표현하고 있으나 변형된 경우
4,5 등급	조사 건물이 당시의 경관 우수성이 표현은 되었으나 심하게 변형되거나 남아있지 않는 경우

(3) 예술적 가치

□ 예술적 가치(의장)

[표 4-6]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예술적 가치 등급별 기준(안)

등급	내용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의 공간 구성 및 외형 등에 가치를 가지는 자산	
1,2 등급	조사 건물이 건립 당시의 예술적 표현이 잘 남아 있는 경우
3 등급	조사 건물이 건립 당시의 예술적 표현이 변형된 경우
4,5 등급	조사 건물이 건립 당시의 예술적 표현이 심하게 변형되거나 남아있지 않는 경우

□ 기술적 가치(가구법 및 치목 기법)

[표4-7]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기술적 가치 등급별 기준(안)

등급	내용
한옥설계자, 도편수 정보, 치목 및 가구 기법이 확인 가능한 자산	
1,2 등급	조사 건물이 당시의 기술이 잘 남아 있는 경우
3 등급	조사 건물이 당시의 기술을 표현하고 있으나 변형된 경우
4,5 등급	조사 건물이 당시의 기술이 표현은 되었으나 심하게 변형되거나 남아있지 않는 경우

□ 보존적 가치 (구조)

[표4-8]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보존적 가치 등급별 기준(안)

등급	내용
건립당시 원형 보전이나 보수 등을 통해 현재도 활용되는 자산	
1,2 등급	주요 부분 또는 구조체가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경우
3 등급	한옥의 일부가 교체 또는 파손되었으나 원형 파악이 가능한 경우
4,5 등급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하여 원형 파악이 어려운 경우

(4) 지역 사회문화적 가치

[표4-9]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지역 사회문화적 가치 등급별 기준(안)

등급	내용
· 지역 주민에 정신적, 정치적, 국가적, 문화적, 감성적 가치 공유 ·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자산 ·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 창출 및 확산	
1,2 등급	조사 건물이 건립 당시 지역의 시대사회적 배경이 남아 있는 경우
3 등급	조사 건물이 건립 당시 지역의 시대사회적 배경이 있으나 변형된 경우
4,5 등급	조사 건물이 건립 당시 지역의 시대사회적 배경이 심하게 변형되거나 남아있지 않는 경우



(5) 유지관리 및 활용 가치

[표4-10]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유지관리 및 활용 가치 등급별 기준(안)

등급	내용
한옥건축자산 지정 이후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지관리 및 활용 부분에 대한 가치를 판단	
1,2 등급	한옥자산 건축물로 지원에 따른 공공적 활용도가 높고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
2 등급	한옥자산 건축물로 지원에 따른 개인적 활용도가 높고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
3,4 등급	한옥자산 건축물로 지원에 따른 활용도는 높으나 유지관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등급	한옥자산 건축물로 지원에 따른 활용도 및 유지관리 능력이 없는 경우

(6)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 종합

[표 4-11]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기준(안) 종합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역사적가치</th><th rowspan="2">경관적 가치</th><th colspan="3">예술적가치</th><th rowspan="2">지역 사회문화적 가치</th><th rowspan="2">유지관리 및 활용가치</th></tr>
<tr><th>역사적가치</th><th>건립연대</th><th>의장</th><th>기술</th><th>보존</th></tr>
<tr><td>1등급</td><td rowspan="2">건물과 관련하여 인물이나 사건이 국가나 전라북도의 역사적 기록 가치가 있는 경우 (단, 문화재는 제외)</td><td>~1900년대 이전 한옥</td><td rowspan="2">건물이 당시의 경관 우수성이 잘 남아 있는 경우</td><td rowspan="2">건물이 건립 당시의 예술적 표현이 잘 남아 있는 경우</td><td rowspan="2">건물이 당시의 기술이 잘 남아 있는 경우</td><td rowspan="2">주요 부분 또는 구조체가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경우</td><td rowspan="2">건물이 건립 당시 지역의 시대사회적 배경이 남아 있는 경우</td><td rowspan="2">한옥자산 건축물로 지원에 따른 공공적 활용도가 높고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td></tr>
<tr><td>2등급</td><td>1900년대 ~ 1980년대 이전</td></tr>
<tr><td>3등급</td><td>건물과 관련하여 인물이나 사건이 지역의 역사적 기록 가치가 있는 경우</td><td>1980년대 ~ 2010년 이전</td><td>건물이 당시의 경관 우수성이 표현하고 있으나 변형된 경우</td><td>건물이 건립 당시의 예술적 표현이 변형된 경우</td><td>건물이 당시의 기술을 표현하고 있으나 변형된 경우</td><td>한옥의 일부가 교체 또는 파손되었으나 원형 파악이 가능한 경우</td><td>조사 건물이 건립 당시 지역의 시대사회적 배경이 있으나 변형된 경우</td><td rowspan="2">한옥자산 건축물로 지원에 따른 활용도는 높으나 유지관리 능력이 없는 경우</td></tr>
<tr><td>4등급</td><td rowspan="2">건물과 관련하여 인문이나 사건이 마을의 역사적 기록 가치가 있는 경우</td><td rowspan="2">2010년대 ~ 2020년 이전</td><td rowspan="2">건물이 당시의 경관 우수성이 표현은 되었으나 심하게 변형되거나 남아 있지 않는 경우</td><td rowspan="2">건물이 건립 당시의 예술적 표현이 심하게 변형되거나 남아 있지 않는 경우</td><td rowspan="2">건물이 당시의 기술이 표현은 되었으나 심하게 변형되거나 남아 있지 않는 경우</td><td rowspan="2">변형 또는 파손이 심하여 원형 파악이 어려운 경우</td><td rowspan="2">건물이 건립 당시 지역의 시대사회적 배경이 심하게 변형되거나 남아 있지 않는 경우</td></tr>
<tr><td>5등급</td><td>한옥자산 건축물로 지원에 따른 활용도 및 유지관리 능력이 없는 경우</td></tr>
<tr><td>(예시)</td><td>1,2등급</td><td>3등급</td><td>1,2등급</td><td>1,2등급</td><td>1,2등급</td><td>1,2등급</td><td>1,2등급</td><td>3,4등급</td></tr>
</table>

다.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 적용 예시

(1) 등급별 정량적 제시(안)

○ 1등급 ~ 5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를 적용하여 정량적 평가

○ 등급별 적용을 통해 가치의 정도를 파악하는 목적과 함께 보수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자료 제공

[표 4-12]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등급별 정량적 제시(안)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수	7	6	4	2	1

(2)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적용 예시

□ **전북-김제시-장화동-건축물-한옥-1번**

○ 가치판단 대상 현황 사진



[그림 4-1] 장회동 210-1 가옥 위성사진



[그림 4-2] 장회동 210-1 가옥 사랑채

○ 가치판단 기준(안) 정량적 적용

[표 4-13]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적용 예시(1번) 기준(안) (정량표 적용)

구분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사회문화적	유지관리적	계
	역사	건립		예술	보존	기술			
등급	1	2	2	2	2	1	2	1	-
점수	7	6	6	6	6	7	6	7	51

○ 건축자산 가치판단 결과 : ●●●●○ : 51점(56점 기준)

- 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 적용 결과 등급별 배점에 따라 56점 만점에



51점으로 건축적 자산가치가 높게 나타남

- 현재의 한옥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활용적인 부분을 적용하면 경제적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북-진안군-백화리-건축물-한옥-2번



[그림 4-3] 백화리 한옥 전경



[그림 4-4] 백화리 한옥 내부

○ 가치판단 기준(안) 정량적 적용

[표 4-14]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적용 예시(2번) 기준(안) (정량표 적용)

구분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사회문화적	유지관리적	계
	역사	건립		예술	보존	기술			
등급	3	1	5	4	5	3	4	5	
점수	4	7	1	2	1	4	2	1	22

○ 건축자산 가치판단 결과 : ●○○○○ : 22점(56점 기준)

- 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 적용 결과 등급별 배점에 따라 56점 만점에 23점으로 건축적 가치가 낮게 나타남
- 건립시기 등의 역사적 가치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통이상의 가치를 보였으나 방치에 따른 경관적 훼손과 지붕변형 등으로 건축적 자산 가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다만 역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관적 부분과 외관의 보존 부분 그리고 유지관리적 차원에서 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경우 건축적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V 한옥건축자산의 관리·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1 한옥 건축자산 관리 활용 기본 원칙
2 한옥건축 관리·활용 가이드라인(안)

Ⅴ. 한옥 건축자산의 관리·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1. 한옥 건축자산 관리·활용 기본 원칙

1) 분야별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분류 항목인 건축물, 공간환경에 따른 기초조사 연구수행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진행
특히 건축은 한옥과 비한옥을 별도 구분하여 기초조사 연구 수행
기초조사 연구 진행시 분류에 따른 기준 보완 필요
또한 건축자산 진흥 조례 검토를 통해 개정하는 과정 필요
한옥건축자산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매년 업그레이드

2) 운영주체별로 관리대상을 명확히 구분 관리

□ **총괄 관리**

○ 국가 및 전라북도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연구 및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 추진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완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상대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의 방향성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건축자산 기초조사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 **지자체별 관리**

○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은 주도적으로 건축자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

○ 현재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및 홍보가 미흡한 실정을 인지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확산 도모

○ 시군 담당자는 건축자산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역의 건축자산



적 가치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독려

□ **선정 위원회와 소유자**

○ 소유자가 건축자산적 가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홍보

○ 소유자는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여 공동체적 관점에서 지원을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필요

○ 선정 위원회는 건축자산을 신청한 자원에 대해서 공정하고 바르게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수행

○ 선정 이후에도 지속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미래 건축자산 확보의 방향성 제시 기반마련

○ 건축자산 조사 및 선정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선정 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는 개인적 감정 보다는 공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대상을 평가하도록 하는 의식 고취

3) 전라북도 한옥의 특성 및 가치판단기준을 적극 반영

□ **전라북도 한옥 특성 및 유형**

○ 전북 한옥의 평면, 가구, 지붕 형태 등의 특성 및 유형을 적용 권장

□ **전라북도 한옥건축가치 판단기준**

○ 역사적가치, 경관적가치, 예술적가치, 사회문화적가치, 유지관리활용가치

□ **단계별 절차 제안**

○ 예비 가치판단과 본 가치판단 단계 진행

○ 가치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발주

○ 예비 가치판단 기준 마련

- 기존 문헌자료 및 세움터 자료, 항공사진을 통해 작성

○ 현장조사 단계에서 예비 가치판단 기준적용

- 현장조사는 국토교통부 건축자산 기초조사 가이드라인의 조사표 내용을 기준으로 조사

○ 자문회의

- 자문회의를 통해 전북 예비 가치판단 기준 제외 및 추가 보완
- 본 가치판단 기준(안) 마련

○ 본 가치판단 기준(안) 적용

- 본 가치판단 적용 및 평가(3회)
- 전문가 공동 현장 조사 및 토론을 통해 수정보완

○ 최종 한옥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 결정

4) 건축자산 진흥지역 또는 한옥마을 지정하여 마을단위로 관리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 시·도지사는 다음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 시. 도지사는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 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 변경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 변경지정 또는 해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5) 관리대상 건축자산을 매년 지정하여 관리예산 확보 및 지원

○ '등록한옥제도' 적극 시행 및 '우수건축자산' 발굴 및 지정하여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 관리

○ 지자체(도, 시군)에서 한옥건축자산 적극 매입하여 관리

○ 지자체 또는 개인, 단체 대상으로 지원

6) 건축자산의 관리 및 유지 체계

□ 관리의 범위

○ (점적관리) 무분별한 근대 건축자산의 훼손 및 멸실 방지, 신축

-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를 도입
-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특례와 조세감면 등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
- 우수한 건축자산 조성을 유도하고 지원 받은 건축자산의 증개축 및 철거시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면적관리) 면단위 건축자산 관리를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

-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관리를 유도
- 건축자산과 그 주변 환경의 통합적인 정비·보전을 활성화
-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건축을 포함하는 구역 등
- (특례적용) '건축 및 세제 등 특례'와 '예산지원' 방안 마련

○ (기타) 건축자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건축자산 보전 및 조성활동에 필요한 기금조성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유지 및 관리

○ 건축자산 기초조사 연구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하도록 방안 마련하여 운영체계 구축

○ 기초조사 연구과정 및 선정 대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등은 협의를 통해 사업 목표, 추진방향에 반영하여 시설 변경, 운영, 프로그램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리

○ 건축자산과 모니터링 데이터를 축적하여 미래 건축자산 확보를 위한 기준수립 자료로 활용

○ 중앙 부처 및 기관장을 중심으로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고 전담팀 및 부서를 운영

2. 한옥건축자산 관리·활용 가이드라인(안)

가. 한옥건축 지원

○ 한옥건축 신축 및 보수시 한옥건축자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

○ 한옥은 거주 목적과 더불어 생활문화를 담는 그릇으로 전북의 브랜드 확산을 위한 한옥건축 육성

○ 한옥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한옥에 자리한 곳에 신축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 지원

○ 교외지역의 경우 새로운 마을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마을에 자리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 한옥지원에 따른 기존마을의 토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지원

○ 한옥을 보유한 마을의 주민에게는 가치를 재인식하게하고 외부 유입을 통해 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미래성 제시

○ 마을의 투자적 가치보다는 마을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치 중심의 공동체 의식 강화

나. 예산 지원 받는 신축 및 보수 한옥 가이드라인(안)

○ 전라북도 거주 규모의 한옥건축의 특성 및 유형을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축 및 보수 한옥의 가이드라인 적용하기 위한 연구 수행 필요



□ 한옥지원조례 제정 독려

○ 한옥지원조례 : 전북도 포함 3곳 지자체 이외 11개 시군 한옥지원조례 제정 독려

□ 한옥정의 주요사용 용어

○ 한옥정의 : 기둥, 보, 목구조(목조), 주요구조, 한식지붕틀, 표준 용어 사용 권장

□ 지원 및 범위

○ 연계지원금(안) : 신축 도비 5천만원, 시비 2천만원, 융자 1억원~1억 3천만원

○ 범위 : 예산의 1/2 권장

□ 한옥건축적 특징 및 유형 권장

○ 구조 : 주동은 5량가, 부속동은 3량가 구성

○ 규모 :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가 일반적(측면은 툇간 구성)

○ 평면 : ㅡ자형, ㄱ자형 배치 권장

○ 입면 : 인방, 처마선 등 의장성 필수

○ 지붕 : 주동은 팔작지붕 권장, 부속동은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구성

○ 처마 : 홑처마 구성 권장, 계획에 따라 겹처마 가능

○ 배치 : 단독채보다는 2채 이상 배치 권장, 마을단위 한옥 지원 독려

○ 건축가의 창작 의도에 관한 부분 고려(현대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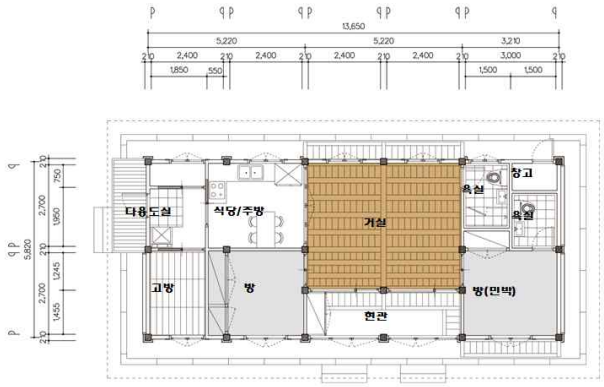
[그림 5-1] 홑처마



[그림 5-2] 겹처마

※ 자료 : 서울시 한옥신축 길잡이. 2015

○ 전라북도 한옥 특성 적용 예시



평면도(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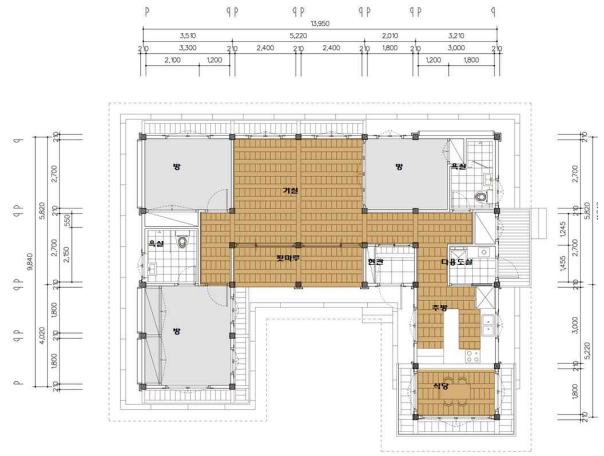
ㅡ자형 조감도



평면도(90.1㎡)



ㄱ자형 조감도



평면도(1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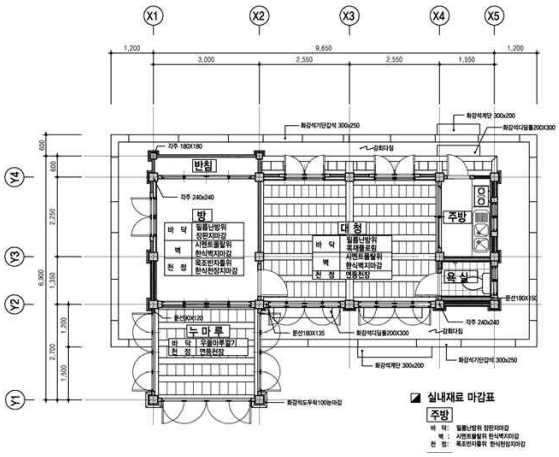
ㄷ자형 조감도

[그림 5-3] 신축한옥주택사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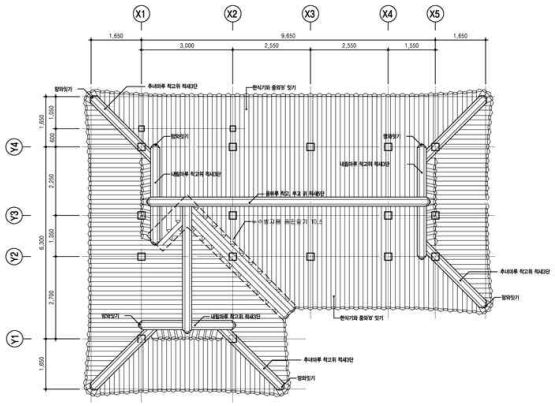
※ 자료 : 한옥기술연구개발, 농촌형 한옥설계도,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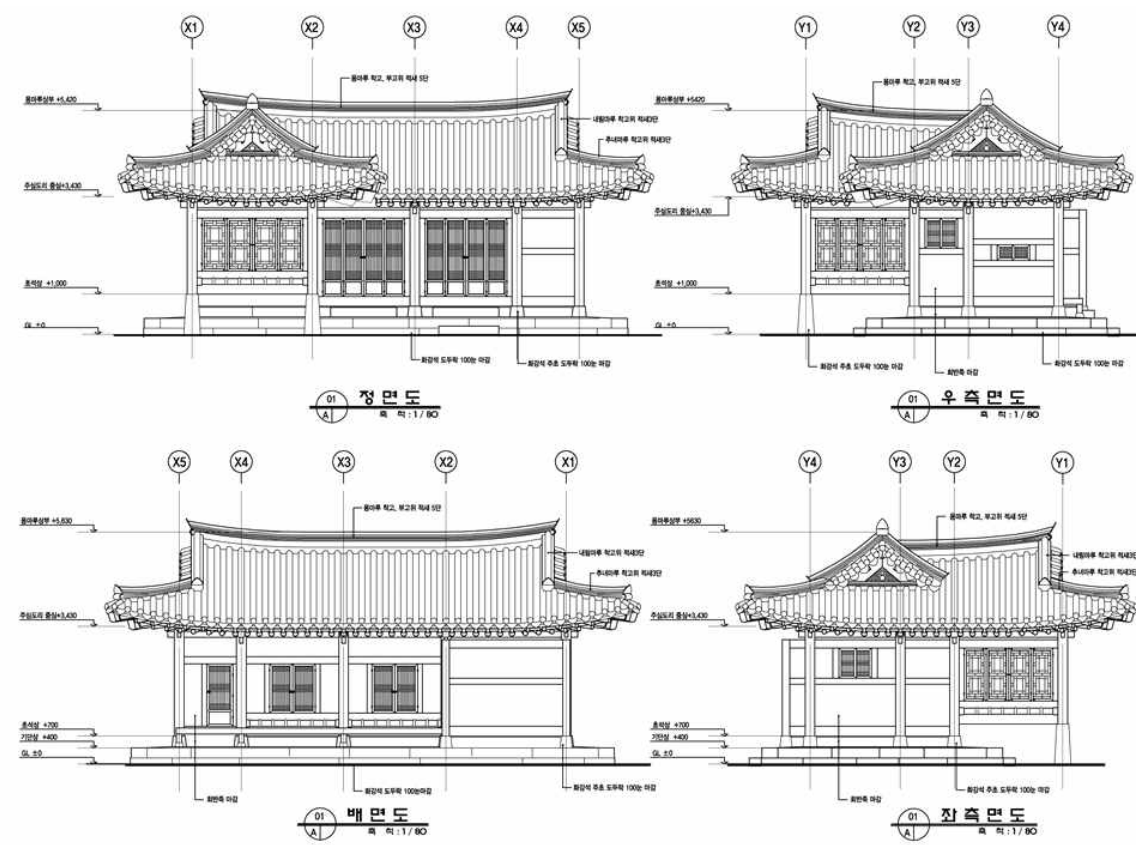
○ 허가 도면 예시



배치도



지붕도



입면도

[그림 5-4] 배치도, 지붕도, 입면도

※ 자료 : 농촌형 한옥설계도, 국토교통부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전라북도 건축자산 정책제언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가.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미흡 및 한계점을 보완하는 정책필요

□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미흡 및 한계점**

○ 현장조사 전 리스트 확보 단계에서부터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미흡

○ 국가정책으로 지자체에서 이루지는 사업이지만 기초조사 연구 진행시 실제 협력 대상인 시군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어려움

○ 건축, 한옥, 문화재는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지만 시군별 예산이나 인력으로 명확한 업무분장 없어 한계 발생

○ 건축자산 지정, 진흥구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 인식 미흡으로 조사완료 이후에도 어려움 발생

□ **관계자간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건축자산 기초조사연구는 건축에서도 한옥, 비한옥, 공간환경, 건조물, 교량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

○ 관련부서, 정책, 전문가의 참여 미비로 인해 자료요청 및 현장조사에 어려움 있음

○ 따라서 건축자산 관련 특별부서 및 관련 기관 협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분야별 지역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 필요

□ **조사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강화**

○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조사 범위의 광역성으로 인해 분야별 박사급 이상의 축으로 3~6명의



팀을 구성으로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 있음

○ 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의 공정성과 전문성의 수준제고 필요

- 현장 조사를 통한 가치판단 실시 할 경우 사전 충분한 교육시간 필요
- 기초조사 연구의 시범 등을 통해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지역에 부합되는 교육 진행 필요

○ 기존의 자산평가도 있지만 미래자산에 대한 확보과정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 통합 교육 등 실시 필요

□ 건축자산을 활용 경제적 가치 창출의 목적 달성 전략 필요

○ 건축자산은 문화유산 등 문화재와 다르게 보수 및 정비 이후 활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나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목적 달성

○ 따라서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제분야 및 용도에 따른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 참여 필요

나. 건축 자산 기초조사 연구

□ 조사범위의 광역적 한계 및 보완

○ 전북의 14개 시군을 일제 조사는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조사 대상이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1일 10개소 이상 조사 어려움

○ 또한 가치평가기준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오류 평가 발생 가능하므로 가치평가기준의 일관성 유지

○ 기초조사를 일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또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별 후보군을 우선 대상으로 조상 실시하는 등 건축은 한옥과 비한옥으로 분류하여 추진 필요

○ 사업기간에 모든 건축자산을 발굴하는 관점 보다는 발굴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추가적으로 확보 필요 이는 미래 건축자산 확보와 같이 추진하는 계획 수립 필요

○ 한옥건축자산은 본 연구 리스트를 기반으로 우선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리스트 및 신축 리스트를 확보하여 예비 자산으로 등록

□ 조사 자료의 실효성 제고

○ 기존 건축자산 기초조사연구를 보면 세움터를 통해 1차 분류를 하고 시군의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통해 자료 수집

○ 수집 자료의 중복 및 불필요한 정보 등이 많거나 지번 등에 오류가 있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짐

○ 따라서 전북연구원 및 건축기본계획에서 언급하는 후보군을 대상으로 1단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단계별 조사를 통해 건축자산을 확보하는 과정 필요

□ 기초조사 연구 건축자산 가치 판단 기준 구체화 필요

○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국가 기준에서 문화재적 접근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특히 역사적 가치에서 사건·인물 등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다만 가업이나 가족사 등의 관점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 주민들의 생활 역사적 관점이 필요해 보임

○ 가치판단 기준에 정량·정성적 판단을 통한 공정성 확보 필요

□ 건축자산 기초조사 연구를 위한 시간 및 예산 지원

○ 기초조사 연구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자산을 확보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

○ 이는 자료 확보, 조사, 평가 등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큰 사업으로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



2. 전라북도 건축자산 정책 제언

□ 국가 정책에 맞춰 전라북도 건축자산 가치판단 기준 구체화

○ 건축(한옥, 비한옥), 공간환경 등 분야별 가치판단을 위해서 세부내용 및 설명 기준과 정량적 지표 마련

□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한 건축자산 기초연구(2016년), 전북건축기본계획(2019년)의 건축자산 내용을 기반으로 기초조사 연구 추진(2021년)

○ 2021년 추진계획인 기초조사연구를 기준으로 단계별 또는 분야별 추진 필요

○ 전라북도 추진을 중심으로 14개 시군이 건축자산 발굴에 인식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 및 단계별 시군 독려

□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 재생 뉴딜사업 공모

○ 2018~2023년 (100여 곳 선정)

○ 신청 조건 : 건축자산 기초조사,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완료(예정)지역

□ 건축자산에 대한 미래가치 인식

○ **'건축자산은 미래 마을이 생존할 수 있는 가치이다'**. 등의 슬로건을 통해 발굴의 필요성 인식 제고(주민참여제 도입)

○ 건축자산은 지켜야 하는 유산이 아니라 활용 정도에 따른 부가가치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을 인식 필요

○ 문화유산은 보전을 전제로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소비되는 한계 보유

○ 건축자산은 발굴과 활용에 한계가 없고 발굴 이후 기존의 자산과 더불어 미래의 발굴 자산과 연계 활용의 방향설정 가능

○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소멸 예정지역에서 건축적 가치를 보유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생존 가능성 제고 정책 마련**

□ 건축자산 활용 온라인 정보체계를 통한 자원의 통합적 운영관리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사례

한국현대건축물	한국전통건축물
	
국내 현대건축물에 대한 상세정보(위치, 건축가, 면적 등)를 소개	국내 전통건축물에 대한 상세정보(위치, 지정문화재, 배치형식 등)를 소개

[그림 6-1]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사례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GIS) http://www.gis-heritage.go.kr 사례

지도서비스	알림마당
	
전국의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록문화재 등을 지도로 제공	문화재의 지형도면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를 안내

[그림 6-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GIS) 사례

부 록

1 전라북도 한옥조례
2 전라북도 한옥건축자산 리스트 및 건축특성
3 참고문헌